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방카슈랑스 등 규제완화가 호주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금감위, 「유기증권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승인, 생보사 상장 길 열려
손보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풍수해보험, 보상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재경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감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손보사 재보험수지 적자 원인 및 개선방안

◆ 해외보험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방카슈랑스 등 규제완화가 호주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1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	16
보험산업 환경	32
1. 해외 경제	32
2. 국내 경제	34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6
보험지표 동향	38
1. 보험산업 총괄	38
2. 생명보험	41
3. 손해보험	52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63
1. '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63
2.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66
3. 금감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승인, 생보사 상장 길 열려	69
4. 손보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73
5. 풍수해보험, 보상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76
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8
7.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80
8.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82
9. 손보사 재보험수지 적자 원인 및 개선방안	84
해외보험 동향	87
1. 북미 동향	87
2. EU 동향	103
3. 일본 동향	118
4. 기타 동향	127
통계표	137

테 마 진 단

◆ 방카슈랑스 등 규제완화가 호주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안철경 연구위원, 기승도 선임연구원

1. 서론

국내보다 약 15~20년 앞서 방카슈랑스 등 금융겸업화를 경험한 호주 보험시장 사례를 규제완화, 시장구조, 판매채널 및 상품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1980년대 이후 금융겸업화 트렌드에 따른 시장진입 규제완화, 고령화 및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대, 정보기술의 발달과 채널의 혁신적 변화 등으로 금융 업무간 영역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에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이 보험시장에 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03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12월까지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7조 7,683억원이 은행 등을 통하여 판매됨.
- 보험판매 방식에서는 신판매채널(은행채널, 직판채널)이 점차 전통대면채널(대리점, 설계사)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계좌회사, 손해보험의 경우 직판전업보험회사가 등장하여 경쟁구조가 치열해짐.
- 향후에도 국내 보험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법제 변화 및 규제 완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금융기관간 장벽이 낮아지고 종합금융화 및 글로벌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자본시장 통합법 및 생명보험회사 상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상장과정을 거쳐 보험지주회사 등을 통한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4월로 예정된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구조개편 및 판매채널 빅뱅이 예상됨.
-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보다 약 15~20년 앞서 방카슈랑스 등 금융겸업화를 경험한 호주 보험시장 사례를 규제완화 측면, 시장구조, 판매채널 및 상품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본격적인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있는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호주 생명보험산업의 규제 완화 및 시장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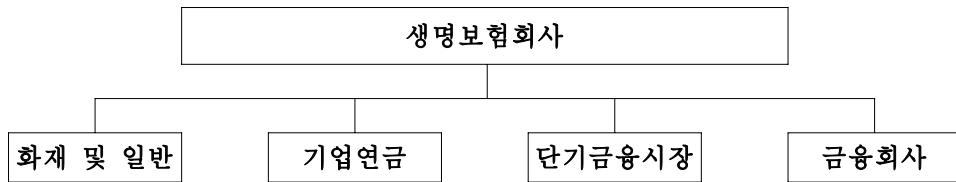
금융겸업화 진행에 따라 종합금융화, 해외진출전략 등을 추구하여 전통적 보험시장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시장구조는 대부분의 호주 국내 전통보험회사가 쇠퇴하고 은행계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호주는 1973년 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 금융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금융겸업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1973년에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5년 방카슈랑스 허용, 1997년 은행지주회사 설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 발표 후 2002년 금융서비스 개혁법이 시행됨.
- 방카슈랑스 등 금융겸업화 진행에 따라 대부분 상호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던 생명보험회사들은 자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형화를 위한 M&A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 1945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이 통과된 후 보험회사는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모자회사』 조직체계를 구축함(<그림1> 참조).
- 금융회사 간 장벽을 둔 동 법률상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치열한 보험시장 내부 경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다각화를 추진함.

<표 1> 호주의 주요 규제 및 감독체제의 변화

주요 규제·감독	내용
보험법 도입(1973년)	'70년대 초 16개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채무건전성기준 등을 포함 보험법 제정(법 제정이전 연방 재무부에 2万 호주달러 예치시 보험회사업 영위)
방카슈랑스 허용 (1985년)	'70년대 후반부터 은행중심의 규제완화로 은행에 의한 생명 보험 상품판매가 일부 허용 하였지만, 이 시기부터 판매 대리점 및 판매제휴형 방카 허용
직업기준 및 감독법제정 (1987년)	보험·연금 위원회를 설립하여 세제혜택, 투자, 급여, 가 입,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조건 규정
연금산업감독 제정 (1993년)	신의, 성실에 기초한 감독 수준 및 필요요건 강화
금융시스템 개혁 발표 (1997년)	은행 지주회사 설립 촉진과 은행 지주회사에 복수이상 금융 기관 소유 허용, 수신기능 담당 금융기관을 확대
통합건전성 감독기구 설립(1998년)	모든 금융건전성 감독 업무를 이관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거래관행 감독
금융서비스 개혁법 시행 (2002년)	상품 공시체제 강화 : 주식, 회사채를 제외한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서 제공 의무화(리스크, 수수료, 세금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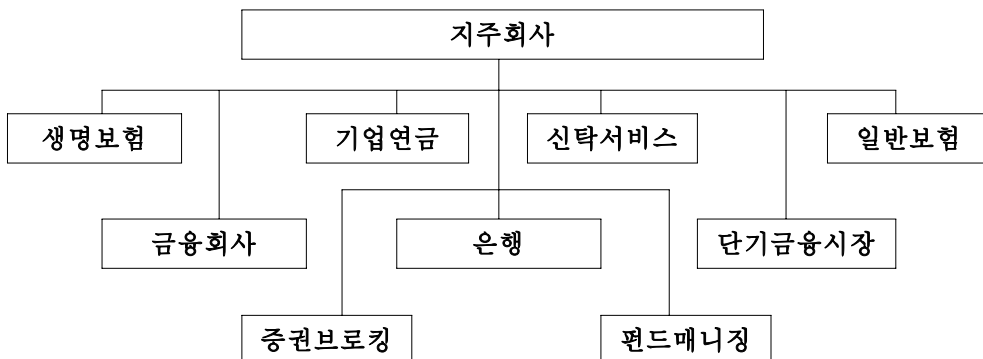
<그림 1> 생명보험회사의 다각화 전략(1960년대)



자료 : Monica Keneley, "Adaptation and change in the Australian life insurance industry : an historical perspective", Accounting Business & Financial History, 2004, p.99.

- 이후 1980년부터 본격화된 규제완화의 결과 호주의 주요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자본화를 통해 대형화 및 종합금융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기 시작함(<그림2> 참조).
- 전통적인 보험회사(AMP, National Mutual, Colonial)들은 1990년대 이후 은행업무 부터 보험 및 재무계획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화를 추구함.

<그림 2> 겸업화 추진이후 생명보험회사의 다각화 전략(1999-2000)



자료 : Da Silva, D, "Shareholder value through positioning", Insurance Record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21, 1996, p.43

- 1990년대에는 호주의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의 증권시장 상장이 본격화됨.
 - 1995년 National Mutual 및 AXA, 1997년 AMP가 탈상호회사화하여 주식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로 2005년 현재 호주 생명보험회사에는 상호회사가 없음.
 - * 1980년대 상호회사의 자산 비중이 78%였으나 2000년에는 대부분의 상호회사가 탈상호회사화 하여 주식회사로 전환 후 증권시장 상장(<표 2>참조)
- 2000년 전후로 M&A로 거대금융그룹이 등장하여 은행업무, 펀드운용, 생명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금융그룹이 호주의 금융산업을 주도함.
 - 1998년 AMP가 GIO(손해보험회사)의 지분을 50% 획득, Colonial이 Legal&General 및 Prudential을 인수함.
 - 1999년 Tower가 FAI 생명보험회사를 인수, Royal SunAlliance가 Tyndall을 인수, AMP가 GIO를 인수함.
 - 2002년 Commonwealth Bank가 Colonial을 인수, NAB(National Australia Bank)가 MLC를 인수합하는 등 은행이 전통보험회사를 인수함.
- 1985년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보험의 상호진출이 자회사를 통해 허용되지만 보험회사의 은행진출보다는 은행이 보험시장의 주도자로 대두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은행의 보험자회사가 1980년대에는 없었으나 2000년대에는 전체 생명보험회사 중 은행자회사의 자산 구성비가 44%에 이름.

<표 2> 1980-2000년의 생명보험 시장 구조변화(자산 MS변화)

산업구조	자산 비율(%)		
	1980	1990	2000
상위 3개 보험회사	64	55	60
상위 10개 보험회사	89.5	82	91
상호회사	78	72	0
은행(보험회사 소유)	0	9	44

자료 : ISC, 1990; APRA, 2000

- 은행 중심의 방카슈랑스 허용, 수수료 공개 등의 규제완화조치로 호주 최대 보험사였던 AMP(Australian Mutual Provident)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국내 전통 보험회사가 쇠퇴하고 은행계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함.
- 2005년 현재 상위 5개사를 보면 1위 은행계 보험회사(Colonial/Commonwealth) 2위 외국사(AXA) 3위 전통보험회사(AMP) 4위 은행계 보험회사(MLC/NAB) 5위 외국사(ING/ANZ)로 재편됨.
- 상위 5개중 AMP를 제외한 4개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설립되었거나, 은행 및 외국사가 M&A(주로 중소형 보험회사)한 보험회사임.

<표 3> 호주 상위 5개사의 연도별 순위

순위	2005년	2002년	1999년	1995년	1992년
1	Colonial/Commonwealth (은행계)	ING/ANZ	Colonial/Commonwealth	AMP	AMP(국내사)
2	AXA (외국사)	Colonial/Commonwealth	AMP	National Mutual	National Mutual (국내사)
3	AMP (국내사)	AXA/AC&L	AXA/AC&L	MLC	MLC(국내사)
4	MLC/NAB(은행계)	AMP	Mercantile Mutual	Mercantile Mutual	Prudential (외국사→국내사)
5	ING/ANZ(외국계)	Westpac/BT	MLC	Prudential	Colonial Mutual (국내사)

주 : 1. National Mutual 은 1999년에 AXA로 명칭 변경

2. 1998년 Colonial 은 Prudential을 인수

자료 : Insurance Pocket Book 각 년도

3. 판매채널 및 상품 변화 추이

방카슈랑스 및 강제기업연금의 도입은 전속설계사의 탈락과 보험상품군의 변화를 가져와 전통적 상품이 급락하는 대신 연금/투자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은행이 공신력, 가격 경쟁력, 고객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시장을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옴

- 90년대 초반 이후 호주보험시장의 판매채널상의 급격한 변화는 1985년 방카슈랑스 도입과 1989년 기업연금(Superannuation) 제도의 강제로입의 결과임.

- 80년대 중반까지 전속설계사(Tied Agent)가 보험시장을 주도하였으며, 90년대 접어들면서 전속설계사를 대량 탈락시키는 설계사 구조조정을 실시함.
-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계사 노조와 회사가 대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속설계사의 수가 이전의 1/3 수준으로 감소됨.

<표 4> 주요 생명보험회사별 전속설계사 수의 변동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수 변동	증감률
AMP	5,000명('90) → 1,300명('97)	74% 감소
NMLA	2,000명('93) → 1,200명('95)	40% 감소
MLC	1,900명('91) → 640명('95)	66% 감소

- 탈락된 전속설계사들은 독립Agent 또는 브로커회사로 전직하였고, 이는 브로커사가 급증('95년 41사 → '97년 121사)하는 원인이 됨.
- 1990년대부터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한 은행이 기존 지점을 활용한 저비용 판매방식으로 전통적인 생명보험시장을 위협함.
- 1995년에 정부는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s)를 승인하였고, 이는 은행의 경쟁력 향상의 원인이 되어 1999년부터 은행채널의 성장이 두드러짐.
- 1990년 중반 이후 은행계 생명보험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급신장으로 기존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이 1990년 67%에서 1996년 37%(신계약보험료기준)로 급락함.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인 Commonwealth Life는 설립 4년 만에 업계 3위, 2003년에는 호주 생명보험업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됨.
-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30%까지 인하하는 등 정기보험 등 순수보험시장에서 저가격 경쟁을 유도함.
- 2000년 이후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와 은행채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편으로 직판시장이 보험시장에 새로운 판매채널로 정착함.
- 2000년대에는 보험시장에서 신규계약 체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FA의 숫자가 줄어들자, 은행들이 FA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계기로 삼음.
-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전속채널에서 비전속 채널이 IFA를 활용한 채널전략을 수행

하였으며, 2002년까지 M&A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FA에 의존하는 채널전략을 더욱 강화함.

- 그러나, 2005년 FA의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FA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면서 보험회사가 FA시장에 접근할 수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은 은행내의 FA나 비은행 딜러채널(dealer channel)을 활용하여 FA시장에 접근함.
- 또한 2000년에는 직판금융서비스시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게 됨.
- 은행들(특히, 4大 대형은행)은 정부 정책과 규제완화 등의 외부환경과, 투자형 상품(기업연금)의 출시, 자체 공신력, 가격 경쟁력, 고객과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회사 설립전략(중소 생명보험회사 M&A 포함)을 통해 보험시장에 침투하여 보험시장을 주도함.

<표 5> 방카슈랑스 도입 후 채널별 생명보험시장 점유율(2004)

판매채널	Tied-Agent	은행	Broker (IFA)	Direct, 기타
시장점유율	15%	21%	51%	12%

자료 : LIAS, NMG Risk Distribution Monitor(2005)

-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방카슈랑스 및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주도적 보험상품군의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종신, 양로보험의 신규보험료 기준 판매비중이 급락하는 대신 연금/투자상품 시장은 확대됨.
- 기업연금(Superannuation)의 강제 도입(1989년 도입 및 1991년 강제실시) 및 퇴직일시금 세율 인상(5% →30%)으로 기업연금 시장이 급성장하게 됨.
- 호주 소비자들은 과세회피를 위해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들의 높은 이직률로 개인퇴직연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됨.
- 또한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은행이 보험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생명보험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우대 폐지로 전통적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

* 기업연금(Superannuation) 상품

- 생산성 보상연금 도입(1985년)후 이 제도를 모든 근로자들로 확대, 강제 실시하고 있으며, 특성은 투자형 상품으로 Unit-Link(Trust)형과 유사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됨.
- 최근 세제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30% →15%), 미국의 401K와 같이 기업 복지 차원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 중임.

<표 6> 개인보험 신규보험료 기준(1990년대 이전)

(단위 : %)

보험종목	1980년	1985년	1990년
종신/양로	47.7	8.3	4.5
정기	15.1	5.4	2.3
투자형	34.2	72.6	48.1
개인연금	3.0	13.7	45.1
합계	100.0	100.0	100.0

<표 7> 상품별 보험료 구성비(90년대 이후)

(단위 : %)

보험종목	2005년	2002년	1999년	1995년	1992년
종신/양로	0.0	0.0	0.0	0.8	1.2
정기	8.4	6.6	4.8	2.4	1.6
투자형	64.7	72.5	70.7	36.9	46.9
환급형	5.9	11.9	17.2	0.0	0.0
개인연금	11.1	0.0	0.0	0.0	0.0
단체생명	5.3	4.3	2.7	1.4	1.6
기타	4.5	4.7	4.5	58.5	4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Insurance Pocket Book, 각 년도.

-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전 기간에 걸쳐 호주의 보험상품은 기업연금이 생명보험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보험시장으로 부각됨.
- 이로 인해 생명보험의 기존 저축성 상품은 생명보험시장에서 점점 줄어들어 2005년 기준으로 기업연금이 전체 생명보험 자산의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87%를 차지함.

- 2004년에 개인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변경되면서, 비수익 펀드산업이 기업연금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함.

4. AMP(Australian Mutual Provident)의 대응사례

방카슈랑스 등 금융겸업화의 추진으로 은행권에 의한 지속적인 시장잠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수익성 위주의 전략, 사업다각화, Wealth Management, 해외진출 등 종합금융서비스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주보험시장에서 전통보험회사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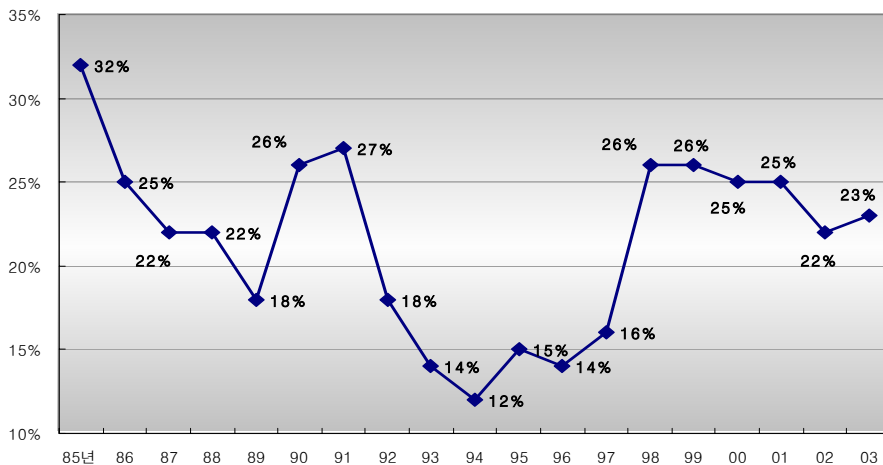
- 1985년(방카슈랑스 도입) 이전 호주의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AMP(M/S 30%대)사는 방카슈랑스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업을 3차례 경영(생명보험회사/은행간 판매제휴, 자체 은행 설립)하였으나 모두 실패함.
- AMP사의 은행 경영 실패이유는 은행과의 기업문화의 차이 극복 문제, 고객정보 활용 및 신뢰도 측면에서 은행에 비하여 열세, 소비자가 세제혜택과 강제가입 기업연금시장과 같은 투자형 시장에서 펀드매니징이 좋은 은행을 선호하였기 때문임.
- 은행은 공시 규제로 수수료가 적은 상품 제공이 가능하였고, 이는 보험회사의 가격 경쟁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함.

<표 8> AMP사의 은행 진출 사례

시기	내용	결과
1985년	· 영국계 은행인 체이스맨하탄 은행과 판매 대리점 제휴, 은행업 진출 시도	실패
1989년	· 호주 4대은행중 하나인 Westpac은행의 생명보험회사 인수 후 AMPac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실패 (Westpac이 再인수)
1998년	· 無점포 e-bank인 AMP bank를 설립하여,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주택 Loan 판매 · AMP사의 만기보험금을 활용,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발매하는 일시납 개인연금까지 확대	실패

- 방카슈랑스 허용, 기업연금(Superannuation) 상품의 등장으로 은행권에 의한 지속적인 시장 잠식 상황에서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수익성 위주의 전략, 사업다각화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추진함.
- 방카슈랑스로 인해 전통적 보험시장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객의 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증대하며 보험시장이 성숙해짐.
- 전속설계사를 가지고 있는 판매채널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전문판매채널(Financial Adviser) 및 해외업무를 강화함.
- 80년대까지 보험사의 은행소유가 불가능하였으나,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소유가 가능해짐.
- 85년 방카슈랑스 허용, 86년 Pension Provider, 89년 기업연금 도입 및 강제가입, 91년 채널/상품 구조개혁, 92년 은행권 MS 팽창, 97년 종합금융화 지향 등 지속적인 규제변화에 따른 개혁을 추구한 결과 시장점유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주 보험시장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림 1> 80년대 이후 AMP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출처 : 생보사 내부자료

<표 9> AMP사의 규제에 대응한 경영전략

기간	규제내용	AMP의 경영전략
1985 이전 (경영 안정기)	판매대리점 · 판매제휴형 방카슈 랑스 허용	o General Agency를 통해 시장지배력 보유 (뉴질랜드 포함) * 85년 호주내 생보MS 32%(1위)
1985-1990 (성장 추구기)	o 금융규제 완화('86) : -Unit Linked Business 허용 -Unbundling 상품판매 허용 o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허용 ('89) : 방카슈랑스 본격화 o Superannuation 의무도입('89) : 은행의 생보업 본격참여 계기	o 방카 대응위해 판매채널 다양화 -비전속Advisor채널인 Hillos사 매수('87) : 부유층, 개인사업자 전담 -Westpac은행과 AMPac라는 JV보험사 설립('89) : 3년 뒤 Westpac이 인수 o 해외시장(영, 일, 인도) 공략(2000년 해외부문 총매출 : 50% 점유) o 전속설계사 의존한 경영구조
1991-1995 (구조 조정기)	o 부실사의 인수합병 및 당국의 자산건전성 강화 시작 o Disclosure 규제 시작 : 수수료 및 영업비 공개('92) o 수당분할지급 변경('93), 거래 관행법('95)시행으로 저능률 설 계사 자연도태	o 자산운용전문회사 설립('91) o 사내 개혁(전속모집인 수 감소 (90년 4,300명 →94년 1,500명) 및 FP화 o 투자부문 분사('93) o 설계사 자격제도 강화 및 비용절감위해 비전 속 Agent화 추진(95)→95년부터 MS 회복 시 작('94, 12%→ '95, 15%)
1996-2000	o 민영저축 소득공제 확대 및 퇴직 저축계정 도입('96) o 은행중심 금융개혁 실시('97)	o 내근직 Advisor조직 설립('97) o 주식회사화(97) 후 IPO 실시('98) o AMP Financial로 사명 변경('98) o 무점포 e-Bank인 AMP Bank설립 o 손보사 M&A
2001 이후	o 금융통합법 제정('02) - 수탈 공개 및 금융업종간 영 역 완전 철폐 - 은행의 대규모 통합 본격화	o 2000년대 이후 수익원천의 변화(투자 60%, 대 물보험 30%, 대인보험 10%) o 글로벌 강화로 해외매출 50%달성('02) o 순수보장성 비중보다 기업연금 비중이 절대 다수(80%에 육박) o 전속설계사의 경우 독립 FP조직 채편('02 5,552명 보유)

5. 한국의 보험시장에의 시사점

방카슈랑스로 인해 보험시장은 은행과 외국보험사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방카슈랑스 전략 추진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은행권과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우위 확보, 전속채널의 고능률화 및 대체채널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

- 호주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보험시장 환경은 현재 한국의 보험시장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금융겸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향후 보험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및 글로벌 보험회사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호주내 전통적인 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금융겸업화로 인해 고비용 구조의 전통적 시스템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1992년부터 판매채널 구조개혁,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 해외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업무영역이 붕괴된 호주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경쟁 체제를 구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저Cost, 공신력 및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강력한 은행의 전략에 보험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방카슈랑스에 대한 대응 실패 및 상품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전통적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보험시장의 주도권이 은행계 및 외국계보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존함.
- 호주 보험시장의 경우 2005년 현재 상위 5개사 중 AMP(3위)를 제외하면 4개사가 은행계 또는 외국사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AMP사의 경우도 호주 Westpac은행의 인수설이 나오고 있어 만일 인수될 경우 호주내 생명보험회사업은 은행계와 외자계가 완전 장악하게 됨.

- 은행의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보험을 중심으로 종합금융기관화 또는 지주회사화를 통해 대형화 및 겸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시 실패한 호주의 경험에 통해 볼 때 보험회사의 은행 진출문제는 회사의 여력과 시너지 효과, 기존 은행들의 선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
 - 그러나 보험을 중심으로 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해외 진출시 자회사 관리 및 보험 업무 연계성을 통한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그룹화 또는 지주회사화 정책을 고려할 시점임.
- 방카슈랑스 전략의 부재 및 대응수단 미흡, 무분별한 사업다각화, 해외투자 손실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략 수립시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AMP사는 다양한 개혁을 통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추구한 결과 호주내 생명보험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확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카슈랑스 대응 미흡 등 경영전략 실패로 M&A의 대상이 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봉착함.
 - 방카슈랑스 초기 M/S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 National Mutual사(M/S 2위 생보사)는 '95년 AXA사에 매각됨.
- 전통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하고 특화된 전통 생명보험 상품개발과 판매 노하우를 강화하여 은행권과의 상품 및 판매전략에서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차지하여야 할 것임.
 -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기업연금 상품 출시 후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 생명보험 상품의 혁신과 판매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종신/양로, 정기보험 등이 보험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됨.
 - 반면 은행권이 중심이 된 기업연금상품은 슈퍼연금보험 상품으로 연금, 저축, 보장 등 모든 기능을 갖춘 상품으로 진화함.
- 국내 전통채널 중심의 보험회사는 전속채널의 고능률화 및 대체 채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이익 기반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글로벌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할 것임.

- 상품 다양화 및 위험 다기화에 따라 고객의 요구수준 및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의 속성 및 니즈에 부합된 Multi채널의 전략적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상품 다기능·복잡한 자문 수요(주로 보장성 상품)가 있는 경우 고능률 재무설계사(FP), 단순·저가격·젊은 층인 경우 직판(Direct), 단순 및 광범위한 고객 대상으로는 은행채널에 역점을 두되, 채널 효율성과 성과를 고려하여 기존의 판매체제의 전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AMP는 생명보험회사의 고유 이익인 위험률차익은 미미하고 해외 자산운용에 의존한 투자수입인 이차익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경기순환이나 시장변동에 따라 이익규모가 급변하는 불안정한 Portfolio에서 현재 전통 보험회사로서 재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전속 Agent 채널의 고능률화 및 대체 채널 확보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병행함.
- 국내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아시아 이머징마켓 중심의 성공적 해외사업 진출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보험사들과의 경쟁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특징 및 시사점

이경희 선임연구원

1. 개요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회원국간 일관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 회원국들은 지난 5년 동안 EU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FSAP)을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만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함.
- 보험회사 파산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EU의 금융전략, 감독 협조,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EU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역내 국가간 제도가 상이하여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에 반해 EU의 은행과 증권 부문에 대한 예금자보호지침은 이미 제정된 상태로 은행 부문의 경우 1994년(94/19/EC) 지침(Deposit-Guarantee Directive)을 통해 역내에서 예금 수취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1997년(97/9/EC) 지침(Investor-Compensation Directive)을 제정해서 역내에서 투자 관련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음.
- 보험 부문의 경우 아직 지침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 11월 유럽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ttee)에서 관련 작업반(Commission Working Group)을 설립한 이후, 일련의 working paper를 발표함.
 - 2001.11.26: 보험회사 청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한 보호기금 (MARKT/2061/01)

- 2002. 7.15: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운영상태 및 향후 목표 (MARKT/2517/02)
- 2003. 4. 9: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목표 논쟁 (MARKT/2504/03)
- 2004. 3. 3: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MARKT/2501/04)
- 2004.10. 4: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MARKT/2513/04)
- 2005. 5.31: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 (MARKT/2512/05)
- 2005.12.12: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 대한 working paper(위원회 초안 MARKT/2534/05)
- 이러한 자료 발표와 논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핵심 내용이 드러나고 있음.
-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적립모델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
- EU 국가들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논의 사항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2005년 12월에 발표된 유럽보험위원회 초안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보호기금 관련 주요 체계 및 논의 사항과 영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검토함.

2. EU 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용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

EU국가 중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EU보험위원회에서는 은행, 증권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가. 보험계약자보호기금

1) 운영 현황

- EU 회원국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대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으로 칭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극히 소수의 국가에서만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는 생명보험, 아일랜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보호기금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음.

<표 1> EU국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운영 현황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독일	×	×	
덴마크	×	×	
프랑스	○	×	△ ¹
핀란드	×	×	
스페인	×	×	△ ²
그리스	×	×	
이태리	×	×	
아일랜드	×	○	
룩셈부르크	×	×	
네덜란드	×	×	
포르투갈	×	×	
스웨덴	×	×	
영국	○	○	

주 : 1) 질병, 상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보험에 대한 제도 설립 추진 중

2) 계약자보호기금은 아니지만, 1984년 보험계약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보험사업자청산위원회) 설립하여 계약자 보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January 2003을 참고로 작성

- 영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권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통합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이후 단일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로 통합하여 운영함.
- 보호하는 금융권역은 5개 부분(sub-scheme)으로 구분됨.

- 예금
- 보험계약(2004년 1월 1일부터 로이즈 계약 포함)
- 보험중개(2005년 1월 14일부터 포함됨)
- 투자 관련 업무
- 모기지 자문 및 체결(2004년 10월 31일부터 포함됨)

□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보험사 파산시 대처 방안은 대부분 강제적 또는 자발적 계약이전·자산매각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계약자 보호장치도 존재함.

○ 오스트리아는 타 채권자의 채권에 비해 손해보험종목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우선권을 인정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분리하여 보험금 지급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 생명보험 관련 계약자보호기금만 존재하는 프랑스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재무적 곤경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됨.

- 만약 이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면 감독당국이 개입함.

- 프랑스에서도 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자보호기금 설립을 검토 중임.

2)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

□ 위원회 초안(이하 초안)에서는 회원국들이 보험보호기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기금을 두어야 한다고 기금 설립 의무를 명시하였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상호보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여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함.

나. 보호기금의 보호 대상

1) 운영 현황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대상 보험종목과 계약자를 가계성 종목의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o 영국

- 신용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재보험 및 로이즈 계약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보호기금 적용
- 발생손해액 및 손실 보험료 보호
- 개인 계약자 및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1.4백만 파운드)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만 보호

o 프랑스

-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발생손해액 및 손실 보험료를 보호
- 특정 법인이나 특정 개인들은 특별한 예금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음.

o 아일랜드

- 손해보험의 개인 계약에 대해서만 보호기금에서 보호함

2)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

□ 초안에서는 보호기금제도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계약자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o 보험계약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고객(professional policyholders)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더 낮음.

-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계약자 범주를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 한정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배상보험과 같은 보험종목은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의 보험금 및 대인배상보험금 등은 보호기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의무보험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보험보호기구(Motor Guarantee Fund), 의무보험 보호기구,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음.
 -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이외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할 것을 제안함.
-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특정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나, 보호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통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보험금
 - 임원, 관리자 및 개인적으로 보험인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보험금, 보험인수 자금의 5% 이상 보유자, 보험인수에 대한 재무제표의 감사 책임이 있는 자 등
 - Directive 98/78/EC에 의해 보험그룹에서 인수한 보험의 보완적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보험금
 - 재무적 곤경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보험금
 -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적용 배제되는 보험금
 - 해상, 운송보험 및 항공보험의 보험금

다. 보호기금의 보상 한도

1) 운영 현황

- EU 국가들의 보상 한도는 매우 다양한데, 공통적인 특징은 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거나,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임¹⁾.
 - 프랑스의 경우 종목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저축성보험의 경우 7만 유로(약 8천 7백만원), 사망 및 질병·상해·장애보험의 경우 9만 유로(약 1억 1천만원)임.
 -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보상한도는 보험금의 65%와 825,329 유로(약 1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영국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며,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2천 파운드(약 370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하며 2천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만 보장하는 공동보험(co-insurance)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영국 예금자보호기금은 통합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별 보상한도가 매우 상이함(예금: £31,700(약 5천 9백만원), 투자 및 모기지: £48,000(약 8천 9백만원), 보험 관련: 한도 없음)
- 영국의 보상한도는 대다수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당 수준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보장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EU지침에서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임.

1) 비EU국가의 보상한도

	생명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손해보험
미국	30만 달러 해약환급금 기준 : 10만 달러 개인연금 : 10만 달러 건강보험 : 50만 달러	재물 및 배상보험 : 30만 달러 미경과보험료 : 1만 달러
캐나다	20만 캐나다 달러 해약환급금 기준 : 6만 캐나다 달러	25만 캐나다 달러
일본	보험금의 90%	보험금의 90%
노르웨이	N/A	한도 없음

<표 2> EU 국가의 보상한도 비교

	생명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손해보험
프랑스	사망, 질병, 상해, 장애보험 : 9만 유로 저축보험: 7만 유로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	N/A
아일랜드	N/A	Min(보험금의 65%, 825,329 유로)
영국	2천 파운드 이하 : 전액 보장 2천 파운드 초과 : 90% 보장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	2천 파운드 이하 : 전액 보장 2천 파운드 초과 : 90% 보장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
스페인	보호 비중 미확정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	보호 비중 미확정 발생손해액 및 미경과보험료 보호

주 : 스페인의 경우 예금보험기구와 유사한 CLEA에서 보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Insurance guarantee schemes*, January 2003.

<표 3> 영국 예금자보호기금의 권역별 보상한도

(단위: 1계약당)

보험금 유형	보상한도	세부 내용
예금	£ 31,700	£ 2,000 이하: 100%, £ 2,000 초과~£ 35,000 : 90%
투자	£ 48,000	£ 30,000 이하: 100%, £ 30,000 초과~£ 50,000 : 90%
모기지 자문 및 체결	£ 48,000	£ 30,000 이하: 100%, £ 30,000 초과~£ 50,000 : 90%
생명보험(연금)	한도 없음	£ 2,000 이하: 100%, £ 2,000 초과 : 90%
손해보험	한도 없음	의무보험 - 100% 비의무보험 - ~£ 2,000 : 100%, £ 2,000 초과 : 90%
손보 자문 및 체결	한도 없음	의무보험 - 100% 비의무보험 - ~£ 2,000 : 100%, £ 2,000 초과 : 90%

자료 : Oxaera,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March 2006.

2) EU보험위원회 초안의 논의 사항

☐ 초안에서는 보험 부문의 보상한도는 은행이나 증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o 은행예금보호지침과 투자자보호지침에서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한도를 1인당 2

만 유로로 통일하였으며, 소액예금(투자)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함으로써 금융회사 파산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반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보험회사의 파산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효과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은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은행의 보호한도보다 높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에 부보된 재화(예: 주택)의 가치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는 보험 분야의 보상한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험의 보상한도가 은행과 증권보다 높게 설정됨.
- 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은 예금 및 투자상품과 달리 계약의 연속성(continuity of contract)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으로는 계약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
- 이런 문제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데, 고령자들이 생명보험, 건강보험을 적정 수준의 보험료로 다시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산 보험사의 계약자 부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보호기금은 보험계약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타 보험사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상범위의 차등화를 명확히 할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호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생명보험의 보상한도는 100 유로(약 1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90% 이상을 보장하도록 함.
- 손해보험의 보상한도는 100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90%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지만, 의무보험과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보상방식에 대해 공동보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경쟁 제고 및 시장효율성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라. 보호기금 적립방식

1) 운영 현황

- ☐ 소비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며,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적립모델의 선정이 필요함.
 - EU국가들의 보증기금 적립방식은 ‘사전적’ (프랑스의 생명보험), ‘사후적’ (아일랜드의 손해보험) 또는 ‘사전방식과 사후방식의 혼합형’ (영국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파산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립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후각출에 의존함.
- ☐ 프랑스는 생명보험 부문의 보호기금에 대해 사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기금 규모는 책임준비금의 0.05% 수준임.
- ☐ 영국의 통합예금보험기금은 향후 1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상보험금 및 관련 경비에 대해서만 사전 부과하는 방식임.
 - 장래 용도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방식(pay-as-you-go)시스템을 채택하기 때문에 사전적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이 제한되며, 투자 관련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FSCS의 분담금 각출 방식
 - FSA 분담금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며, FSA를 통해 분담금 징수
 - 장래 12개월 동안 소요될 비용에 대한 예측(운영경비 및 지급 보험금)에 기반하여 보험료 부과
 - FSCS의 비용은 발생확률은 매우 낮지만, 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의 발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영업 관련 시장환경과 FSA로부터 입수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소요될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함.

- 필요한 비용 예측을 위해서는 파산 빈도, 파산 1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 계약 1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은 금융업권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권역별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함.

- 은행의 경우 보호 예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부과한도는 부보예금의 0.3% 수준이며, 투자 관련 부문은 누적기준 £400m(약 7천억원)을 부과한도로 함.

- 보험의 경우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부과한도는 순보험료의 0.8%를 초과하지 못함.

- 손해보험 중개업자의 보험료는 연소득 기준으로 하며 부과한도는 연소득의 0.8% 수준임.

- 2005년 기준 보험권의 부과한도는 생명보험 및 연금 £544m(약 1조원), 손해보험 £267m(약 5천억원), 손해보험 중개업 £82m(1,500억원) 수준임.

<표 4> 영국 예금자보호기구의 보험료 부과 기준 및 한도

기금	납부 그룹	부과 기준	부과 한도
예금	예금 수취자	보호 예금	부보예금의 0.3%
보험	손해보험 사업자	관련 순보험료	순보험료의 0.8%
	생명보험 사업자	관련 순보험료	
투자	펀드매니저	관리하는 펀드 수	£ 400m (누적 기준)
	집합투자 관련자	총소득	
	자문 브로커	고객 규모	
	principal dealer	거래 규모	
모기지 자문 및 체결	모기지 자문 및 체결업자	연소득	연소득의 0.8%
손해보험 중개	손해보험중개업자	연소득	연소득의 0.8%

자료 : Oxera,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March 2006.

- FSCS가 출범한 2001년 이후 7년 동안 보험권역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 수준은 연간 0~£130m(약 2,400억원)에 불과함.

- 역대 최대 보험료는 FY2004에 부담한 £130m로서 이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Independent사와 Chester Street사 파산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부과한 것임.

- 2005 기준 영국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생명보험 £99,270m(약 184조원), 가계성 손해보험 £35,913m(약 67조원)임을 감안할 때 부과된 예보험료는 매우 낮은 수준임
- o 실제 지출액이 예상보다 적어 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FSCS 재량으로 해당 권역의 금융회사들에게 환급해 줄 수도 있음.
- FSCS는 FY2005에 손해보험회사들에게 £42m(780억원)을 환급한 바 있음.

<표 5> 영국의 예금보험료 추이(보험 부문)

(단위: 백만 파운드)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생명보험	0	0	0	0	0	0	0.5
손해보험	150	0	0	130	45	0	0
손보중개	0	0	0	0	1.3	0.5	2.0

자료 : http://www.fscs.org.uk/industry/funding/Levy_Information/Levy_Amounts에서 작성

2) 초안의 논의 사항

□ 초안에서는 기금 적립방식에 대해 사전적립과 사후각출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기금 적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o 사전적립방식의 장점은

- 대규모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 이론적으로 리스크에 기준한 보험료 징수를 통해 잠재적인 부실보험사로부터 각출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
- 파산 금융기관이 그들이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일정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
- 납부 기간 동안 평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임.

o 사전적립방식의 단점은

-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보호기금으로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아짐
- 기금운용을 위한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deadweight costs of capital)이 발생함.

- 사후각출방식의 장점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생존회사가 손실금을 분담한다는 것임.

3) 영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사항

□ 통합예보기금을 운영 중인 영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2006년 3월 개선안인 discussion paper(DP06/1: FSCS funding review)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consultation paper를 2007년 3월에 발표하였음.

- 개선안이 승인될 경우 FY2008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임.

□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기금적립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하부 그룹²⁾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다시 상품 공급자(provision)와 중개업자(intermediation)로 구분하였음.

- 개선모델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

- ① 영속성과 탄력성: 예금보험제도는 장래 시나리오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② 동질성: 영업활동 유형이 동질적인 회사들이 하부 그룹(sub-classes)으로 분류되어야 함(예: 생명보험과 연금 중개 그룹).
- ③ 공통의 이익: 상호 관련성이 높은 회사들끼리는 예금보험 부채에 대해 상호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짐.
- ④ 공정성: 일차적으로 하부 그룹에서 파산비용을 부담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하부 그룹 내 타 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함.
- ⑤ 가용성: 보상비용은 각각의 하부 그룹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⑥ 낮은 변동성: 부과방식 하에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험료 부과 변동성을 낮추도록 함.
- ⑦ 경제성과 실용성: 제도를 운영하는 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함.

2) 생보 및 연금 / 투자 / 손해보험 / 예금 / 가계금융

- ☐ 또한, 현재 1년 단위로 예보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산출 주기를 2년 단위로 늘리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마. EU지침 관련 쟁점 사항 및 기타

- ☐ 유럽보험위원회에서 EU지침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계약자보호기금에 관한 지침이 최저 수준의 통일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 ②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구별이 바람직한가?
- ③ 부분보장과 자가보유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 ④ 지침에서 소규모업체를 보호해야 하는가?
- ⑤ 보험보호기금에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 보장해야 하는가?

- ☐ 단체보험 관련 이슈

- o 계약자의 사업영위와 관계없이 자연인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치되었으나, 단체보험, 근재보험(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근무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등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 o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모색하고 있음.³⁾

- ☐ 위원회에서는 보험보호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의 인식향상을 지적하였음.

- o 보호기금은 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야 함.
- o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기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3) 연간매출액 규모가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10명 미만인 고용주를 의미함

3. 시사점

EU국가의 보호기금 운용실태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① 보험계약의 연속성 중시, ② 낮은 목표기금, ③ 보호기금의 역할 제한, ④ 은행·증권과 보험금의 보상한도 차등화, ⑤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보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EU국가에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을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
 - 이러한 현상은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금 지급보다는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립하는 기금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을 사전적립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목표기금 규모도 책임준비금의 0.05%에 불과함.
 - 영국의 경우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과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우 탄력적이며 보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EU에서 추진 중인 보험계약자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보호기금의 역할과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기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보호기금의 역할은 감독적 목적이 아니라 보험사업자 파산시 계약자를 보호하는데 한정되고 있음.
- 보험금에 대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의 보장성 측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은행·증권(2만 유로)보다 높게 설정함.
 - 다만,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보험 방식(100 유로 초과분의

90%, 의무보험 및 제3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은 무제한)을 선택함.

o 보호대상은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계약자로 한정함.

☐ 예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특히 EU지침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은 은행·증권과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7년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로,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감.

- 2007년 1/4분기 미국의 경기 둔화 폭 확대에 불구하고, 일본·유로·중국 등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2007년 1/4분기 GDP성장률은 0.6%(잠정치)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이는 민간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의한 수입증가폭 확대, 재고투자감소에 기인함.
- 중국경제는 계속된 추가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및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지속 등 과열요소 상존
 -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과열과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 기준율 인상, 환율변동 폭 확대 등의 긴급조치를 발표
- 일본의 2007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설비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 및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함.
- 유로지역 경제는 금리상승과 독일의 부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전분기보다는 낮으나 예상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임.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1/4
미 국	5.6	2.6	2.0	2.5	3.3	0.6
중 국	10.4	11.5	10.6	10.4	10.7	11.1
일 본	3.1	1.2	0.3	5.0	2.2	2.4
유 로	0.8	1.0	0.6	0.9	2.7	0.6

주 : 미국 전기비연율, 중국 동기비, 일본·유로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7. 6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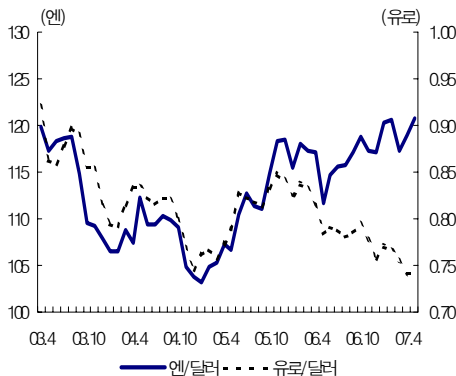
(단위: %)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1/4
개인소비지출	4.8	2.6	2.8	4.2	3.2	4.4
주거건축투자	-0.3	-11.1	-18.7	-19.8	-4.2	-15.4
산업생산	5.0	6.5	4.0	-1.5	3.9	0.9
소매판매	3.2	0.7	0.9	0.2	6.1	1.5

주 : 소비지출·건축투자 전기비연율, 생산·판매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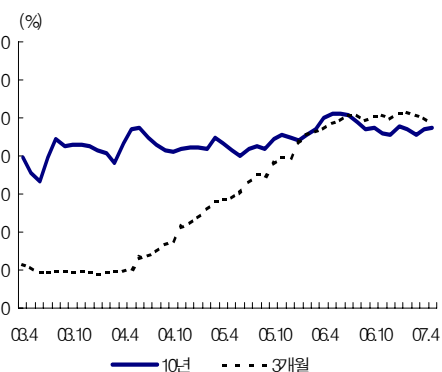
- 2007년 1/4분기 미국은 연방기금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여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됐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지속하고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함.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1/4분기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 주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채권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3월 4.56%에서 4월에는 4.69%, 5월에는 4.75%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역전 폭을 줄임.
- 일본은 2007년 2월 21일에 0.25%에서 0.5%로 상향조정 한 후 연속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8월 금리 인상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지속 전망 등으로 대체로 상승 지속
- 유로지역은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는데 따라 기준금리를 4%로 인상하면서 2001년 8월래 기준금리가 최고치로 상승함.
- 미국의 뉴욕증시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우려를 완화시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이어 갔음.
- 5월 CPI는 0.7% 상승해 200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한 근원 CPI 상승률은 2.2%를 기록, 1년만에 최저 상승률을 나타내며 인플레이 우려를 희석시킴.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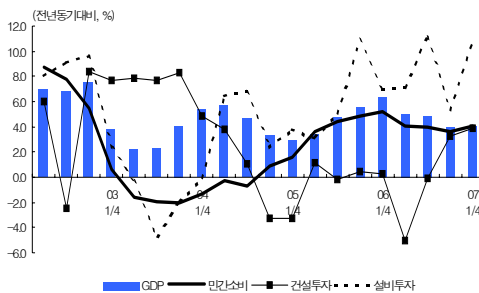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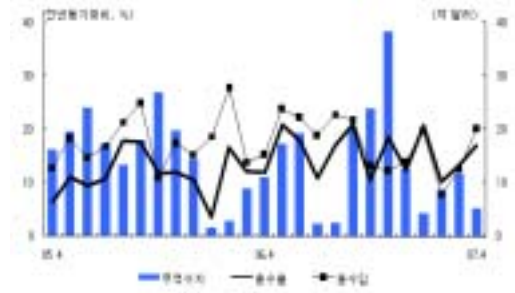
2007년 1/4분기에 GDP는 수출호조,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4.0% 성장했으며, 무역수지는 자동차, 컴퓨터 등의 수출호조에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음.

- GDP는 2007년 1/4분기 이후 대규모 재고조정발생, 수출호조,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하강을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전환될 준비를 하면서 4.0% 성장함.
-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내구재(자동차, 컴퓨터 등)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GDP성장을 앞서는 4.1%의 다소 큰 폭의 성장을 했으나 4월 의류 등의 판매 부진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설비투자는 1/4분기 반도체 제조용장비, 사무용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운수장비투자의 감소폭이 축소됨에 따라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200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5.3% → 10.8%)
- 건설투자는 2006년 4/4분기 성장세로 돌아선 후 2007년 1/4분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액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3.9% 성장, 회복세를 이어감.
- 2007년 1/4분기 전체로 수출이 30.1%(393.5억불) 증가하였으나 고유가 등에 따라 수입이 급증(51.8%, 388.0억불)하면서 무역수지는 5.5억불 흑자
- 무역수지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수출이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증가세에 힘입어 호조세를 지속한 반면,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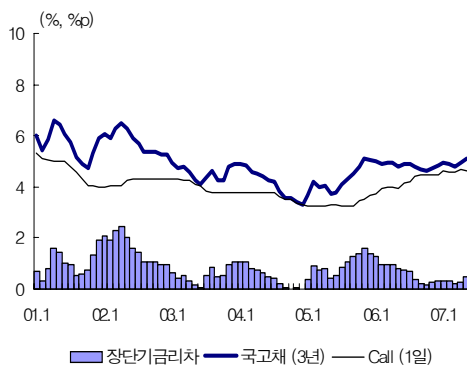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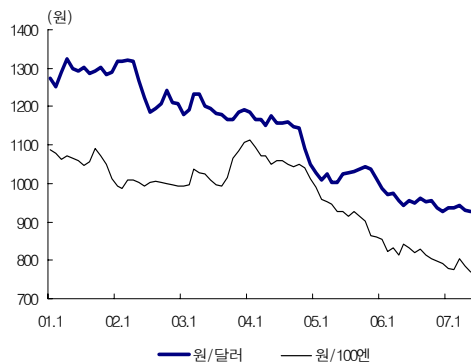
- 2007년 5월 국고채(3년물) 금리는 5.10%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지속적인 금리상승세를 나타냈으나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2006년 8월 수준(4.50%)으로 계속 유지함.
- 1/4분기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글로벌 채권약세 속에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 3월 4.79%에서 2007년 5월에는 5.10%까지 상승함.
-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경제 상승기조 속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장도 전반적인 유동성사정이 원활하다는 점들을 감안해 기존의 수준(4.5%)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결함에 따라 낮은 수준을 지속함.
- 원/달러 환율은 5월 현재도 여전히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100엔 환율도 3월 소폭의 반전이 있었으나 원화 강세에 따른 하락 기조를 유지함.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가 호조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과 조선업체 수주분 증가 등으로 920~930원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원/100엔 환율은 일본의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글로벌 엔화약세 심화현상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 대외변수에 의해 하락세가 심화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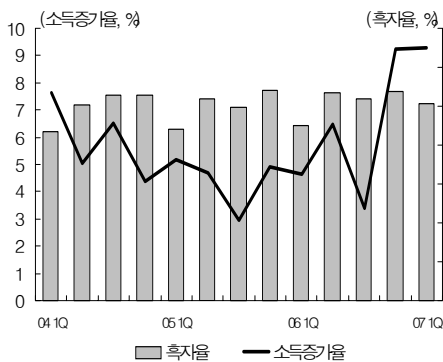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소비자기대지수는 2007년 2/4분기 들어 100을 상회하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기대감을 반영했으며, 1/4분기 중 금융권의 순수신은 은행권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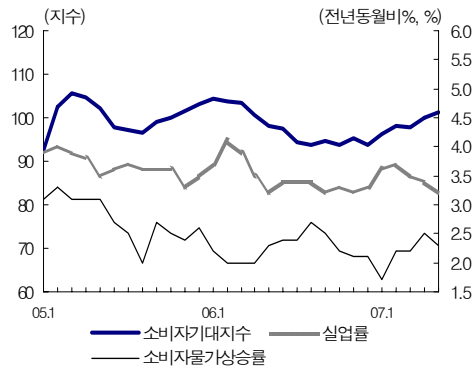
- 2007년 2/4분기 들어 4월, 5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0을 상회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은 전년동기보다 상승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2006년 12월 93.7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07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100.1과 101.1로 연속 상승하며,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점증적으로 증가함.
- 2007년 5월 실업률은 200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3.2%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었으나 농산물가격이 큰 폭 하락하고 석유류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낮은 상승률을 보여 전년동월 대비 오름세가 둔화됨.
- 2007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6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4만6천원으로 5.4% 증가하면서 흑자율(25.4%)은 3.0%p 상승함.

<그림 7>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7년 1/4분기(FY2006 4/4분기)중 은행 수신은 신탁이 늘었으나 예금은 감소하였으며, 투신권은 주식형이 증가한 반면 채권/혼합형이 크게 감소함.
- 2007년 1/4분기에 은행 순수신은 지급준비율 인상조치에 따라 자금 확보를 위해 CD순발행이 증가했으나 이월 결제 대기자금이 연초 대규모 이탈 등의 영향으로 약 3조3천억원으로 크게 감소함.
- 1/4분기에 투신권의 자금흐름은 주식형펀드의 큰 유입이 있었으나 시장금리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진 혼합형펀드와 채권형펀드에서 유출이 커,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1/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은 환매조건부채권도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고객예탁금이 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전분기 대비 122.1% 증가함.
- FY2006 4/4분기에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에 의한 보험료가 유입되고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자금유입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질병보험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년동기 대비 약 16.7% 증가한 9조 4,663억원을 기록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CY2007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115,113	94,663
생명보험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94,257	74,700
손해보험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20,856	19,963
은 행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181,165	33,002
일반계정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165,339	-2,513
신탁계정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15,826	35,515
증 권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13,445	29,858
투 신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97,260	73,030
중 금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10,350	60,303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김진익 선임연구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6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성장률은 하락하였으나 생존, 사망보험의 성장세 및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1%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 FY2006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0.1% 성장함.
- 생명보험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왔던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252.1→37.5%)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생존, 사망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8.1%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성장 회복과 장기보험의 지속적인 성장호조로 인해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5.0%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2.8	20.0	14.4	14.8	10.0	2.6	6.8	8.1
손해보험	69,438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11.6	12.8	10.8	13.1	16.5	12.3	18.3	15.0
합 계	245,061	225,126	871,957	226,395	227,950	258,177	247,856	960,378
	12.4	17.8	13.3	14.2	12.0	5.4	10.1	10.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6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전년대비 14.1%, 손해보험이 15.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4.4%의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6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 이면서 전년대비 14.4% 성장한 330조 1,029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투자수지 성장 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4.1% 증가한 273조 1,316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전년대비 15.6% 증가한 56조 9,713억원을 기록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347,662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4.8	2.0	13.1	2.8	4.0	3.9	2.8	14.1
손해보험	488,995	492,774	492,774	508,801	528,852	556,053	569,713	569,713
	4.9	0.7	13.4	3.3	3.9	5.1	2.5	15.6
합계	2,836,657	2,886,393	2,886,393	2,969,534	3,087,957	3,213,861	3,301,029	3,301,029
	4.8	1.8	13.2	2.9	4.0	4.1	2.7	14.4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FY2006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생존, 사망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확대에 따른 수입보험료 성장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한 198만 9천원을 기록하고, 보험침투도는 11.3%로 상승함.

- FY2006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생·손보 수입보험료가 모두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198만 9천원을 기록, 향후 2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침투도는 보험료 성장률이 경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전년보다 0.5%p 증가한 11.3%를 나타냄.
- FY2006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37만 6천원, 손해보험이 61만 3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98만 9천원에 이르러 FY2005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6 보험침투도는 11.3%로 FY2000 11.8%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FY2004 9.9%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0.2%p 증가한 7.8%를 시현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0.3%p 증가한 3.5%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연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구분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1,113	1,000	1,030	1,053	1,118	1,273	1,376
	손보	349	395	433	447	483	533	613
	계	1,461	1,395	1,463	1,500	1,601	1,806	1,989
보험	침투도							
	(%)							
	생보	9.0	7.6	7.2	7.0	6.9	7.6	7.8
	손보	2.8	3.0	3.0	2.9	3.0	3.2	3.5
	계	11.8	10.6	10.2	9.9	9.9	10.8	11.3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명목GDP임(2006년은 잠정치임).
 2) 한국은행의 GDP계산방식과 기준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거수치를 변경함.
 3)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추계인구(2006년 11월 특별추계자료로 수정 보완)
 자료 : www.bok.or.kr(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nso.go.kr(통계청, 추계인구)

(동향분석팀)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6조 4,549억원으로 FY2005에 비해 성장률이 6.3%p 둔화됨.
 - 개인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지난해 252.4%에서 올해 37.5%로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성장률이 하락
 - 지난해 31.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퇴직보험의 성장률이 -6.8%로 떨어지면서 단체보험이 전체의 성장률 하락을 주도
- FY2006 4/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273조 1,3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2.8%, 연간 14.1% 증가
 -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FY2007에는 생명보험산업 총자산 규모가 300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20.0	14.4	14.8	10.0	2.6	6.8	8.1
총 자 산	2,393,619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2.0	13.1	2.8	4.0	3.9	2.8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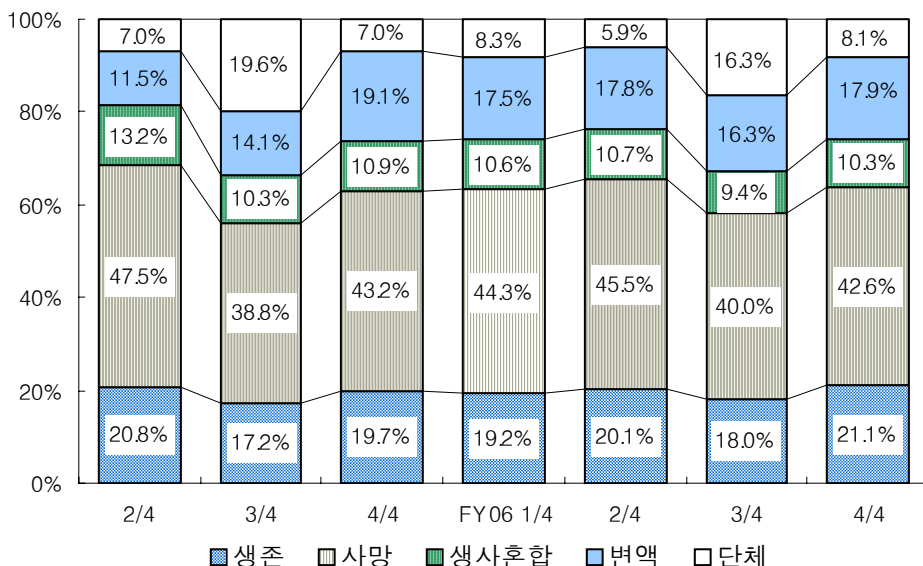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6 4/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변액보험의 비중이 축소되고 생존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이 확대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17.9%로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하며 변액보험 판매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비중 축소를 기록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42.6%와 10.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중이 모두 소폭 축소
- 생존보험의 경우 당 분기 수입보험료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수입보험료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한 21.1%를 기록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 또한 퇴직보험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8.1%를 기록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6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성장률이 개선된 반면 변액보험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지난해 14.0%보다 하락한 9.4%의 성장률을 기록
 -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13조 166억원으로 지난해 -1.2%의 마이너스 성장에 비해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며, 사망보험은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대비 -6.4%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8.9% 성장률에 비해서는 소폭 호전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37.5% 성장하였으나 FY2005 252.4% 성장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개인보험 전체 성장률의 하락을 주도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퇴직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19.6%p 하락한 -2.5%의 성장률을 기록
 - 일반단체보험은 전년대비 -12.3% 성장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나 FY2005 -16.5%보다는 소폭 호전
 -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31.2%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전년대비 -6.8% 성장률을 기록
-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경우 변액보험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보험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된 5.5%를 기록하였으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의 전년동기대비 고성장애 힘입어 23.6% 성장
 - 변액보험의 경우 하반기 주식시장 보합세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라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하락을 주도
 -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하며 2년여 만에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6% 성장하면서 플러스성장으로 전환
 -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두 분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2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성장률	-7.4	8.0	-1.2	5.6	6.4	7.5	14.3	8.6
	구성비	17.2	19.7	19.5	19.2	20.1	18.0	21.1	19.6
사망	보험료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성장률	5.7	5.4	6.2	4.9	5.3	5.8	5.3	5.3
	구성비	38.8	43.2	44.1	44.3	45.5	40.0	42.6	43.0
생사 혼합	보험료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성장률	-10.9	-8.2	-8.9	-8.9	-11.0	-6.1	0.6	-6.4
	구성비	10.3	10.9	11.8	10.6	10.7	9.4	10.3	10.2
변액 보험	보험료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성장률	295.8	168.4	252.4	127.2	70.7	18.8	-0.1	37.5
	구성비	14.1	19.1	13.6	17.5	17.8	16.3	17.9	17.3
개인 계	보험료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성장률	14.2	18.8	14.0	14.9	11.3	6.9	5.5	9.4
	구성비	80.4	93.0	89.1	91.7	94.1	83.7	91.9	90.1
단체	보험료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성장률	7.2	38.2	17.1	13.6	-7.1	-15.0	23.6	-2.5
	구성비	19.6	7.0	10.9	8.3	5.9	16.3	8.1	9.8
합계	보험료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성장률	12.8	20.0	14.4	14.8	10.0	2.6	6.8	8.1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동반 상승함.
- 상위 3사의 연간 시장점유율은 62.3%로 지난해 65.9%에 비해 3.6%p 하락하였고 특히 FY2006 4/4분기 점유율은 60.7%로 계속 하락추세를 이어감.
 - 외국사의 연간 점유율은 20.1%로 지난해 18.3%에 비해 1.8%p 상승하면서 국내중소형사보다 앞서 연간 20%대의 점유율을 달성
 - 국내중소형사의 연간 점유율은 17.6%로 작년 15.8%에 비해 1.8%p 상승하였으나 FY2006 4/4분기 점유율은 3/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함.
 -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감소 추세로 인해 0.1554를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0.0185 하락하며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유지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66.9	64.3	65.9	63.6	62.4	62.5	60.7	62.3
외 국 사	16.8	20.1	18.3	20.1	20.7	18.7	21.0	20.1
국내중소형사	16.2	15.6	15.8	16.3	16.9	18.8	18.3	17.6
허핀달지수	0.1778	0.1632	0.1739	0.1614	0.1546	0.1578	0.1486	0.1554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7년 3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6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 투자영업수지, 기타수지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준비금전입액 또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1% 감소한 1조 9,475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는 모두 수익증가, 비용하락을 경험하며 전년대비 각각 42.0%, 8.7% 증가하였음.
 - 전체수지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타수지도 135.0% 증가하면서 전체수지는 전년대비 25.1% 증가한 22조 3,087억 원을 기록
 - 그러나 준비금전입액이 전년대비 30.6% 증가한 19조 7,252억 원을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1% 감소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371,024	500,499	125,079	252,867	383,363	520,529
	투자영업	91,883	125,203	31,688	62,531	95,061	130,924
	기타	6,576	10,080	3,054	6,685	10,746	16,807
	소계	469,484	635,782	159,821	322,083	489,175	668,260
총 비 용	보험영업	317,595	428,830	97,465	203,548	307,943	418,740
	투자영업	17,221	22,803	5,351	9,367	14,586	19,616
	기타비용	4,129	5,830	1,605	3,246	5,054	6,817
	소계	338,945	457,463	104,421	216,161	327,583	445,173
수 지 차	보험영업	53,429	71,669	27,614	49,319	75,420	101,789
	투자영업	74,662	102,400	26,337	53,164	80,481	111,308
	기타	2,448	4,250	1,449	3,439	5,691	9,989
	소계	130,539	178,319	55,400	105,922	161,592	223,087
준비금전입		111,892	151,083	50,636	95,226	144,802	197,252
법인세		4,170	6,264	1,330	2,895	4,433	6,360
당기순이익		14,477	20,972	3,433	7,800	12,357	19,475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6 연간 보험금지급률은 52.8%로 전년대비 5.1%p 감소하였고,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0.3%p 증가한 18.2%를 기록
- 변액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12.3%p 상승한 18.8%를 기록하였고 사망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39.2%를 기록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연간 보험금지급률은 각각 62.7%, 108.2%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9%p, 42.8%p 감소
- FY2006 4/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56.5%로 전년동기대비 2.1%p 하락하였으며 이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 하락이 원인
- 연간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신계약률이 3.5%p감소하여 1.3%p감소한 해약률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56.9	58.6	57.9	52.7	55.1	47.7	56.5	52.8
- 생 존	70.0	70.4	66.6	60.8	66.7	62.5	61.0	62.7
- 사 망	36.4	39.4	36.6	37.2	40.9	38.4	40.3	39.2
- 생사혼합	199.2	133.2	151.0	108.3	109.9	110.4	104.3	108.2
- 변 액	6.1	8.0	6.5	12.1	14.7	20.9	26.3	18.8
- 개 인 계	59.1	50.5	59.9	45.6	49.3	48.2	49.5	48.2
사 업 비 율	16.3	18.0	17.9	17.8	18.8	17.1	19.2	18.2
신 계 약 률	19.1	28.0	28.0	5.5	11.5	17.7	24.5	24.5
해 약 률	8.8	11.9	11.9	3.1	5.8	8.1	10.6	10.6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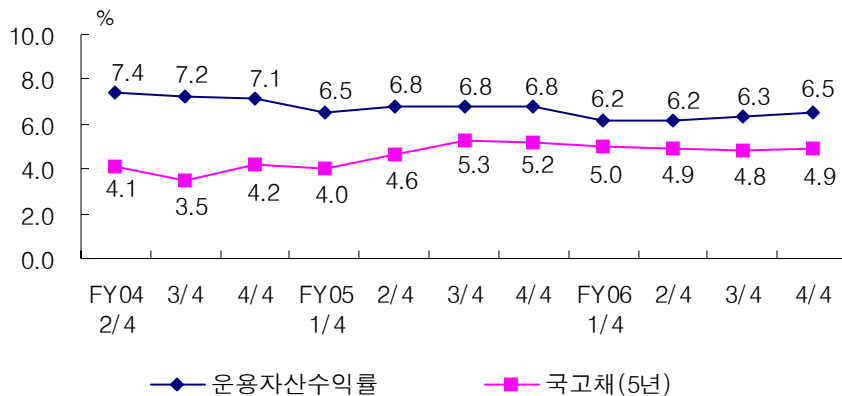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6.5%를 기록
- 항목별로는 유가증권 수익률이 전분기대비 0.2%p, 대출채권 수익률이 0.1%p 상승하였고 부동산의 수익률도 0.6%p 상승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은 60.5%로 전분기 대비 0.8%p 상승한 반면 대출채권의 비중은 21.6%로 0.4%p 감소
-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5.7%를 기록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0	4.0	2.4	3.9	2.1	4.5	2.4	4.3	2.1	4.8
유 가 증 권	59.4	6.1	59.2	5.4	60.0	5.4	59.7	5.5	60.5	5.7
○ 단기매매증권	2.9	9.5	2.3	5.7	2.3	5.8	2.3	6.0	2.1	6.2
- 주 식	0.1	93.9	0.1	12.0	0.1	17.4	0.1	19.0	0.1	21.4
- 채권 등	1.6	6.9	1.5	5.7	1.2	6.4	1.1	5.8	1.1	6.0
- 수익증권	1.2	5.4	0.7	4.9	1.0	3.9	1.0	4.7	0.9	4.8
○ 매도가능증권	46.2	6.0	46.3	5.2	47.0	5.3	46.7	5.4	47.7	5.7
- 주 식	5.1	4.0	4.8	3.7	5.1	2.5	4.9	2.2	4.7	5.2
- 채권 등	37.7	6.5	38.3	5.3	38.6	5.7	38.5	5.7	39.7	5.7
- 수익증권	3.4	3.4	3.2	6.8	3.3	5.2	3.2	6.6	3.3	6.4
○ 만기보유증권	9.5	5.3	9.8	5.8	9.9	5.8	9.9	5.9	9.9	6.0
- 채권 등	9.5	5.3	9.8	5.8	9.9	5.8	9.9	5.9	9.9	6.0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4.7	0.7	6.4	0.8	5.1	0.8	5.0	0.8	5.4
대 출 채 권	22.5	9.6	22.2	9.1	21.7	9.2	22.0	9.2	21.6	9.3
부 동 산	4.4	4.3	4.3	3.7	4.3	3.7	4.2	3.8	4.2	4.4
운 용 자 산 계	88.2	6.8	88.0	6.2	88.1	6.2	88.3	6.3	88.4	6.5
비 운 용 자 산	11.8	3.2	12.0	4.6	11.9	2.9	11.7	2.6	11.6	2.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8.1)	6.4	100.0 (87.7)	6.0	100.0 (87.1)	5.8	100.0 (86.1)	5.9	100.0 (85.6)	6.1
특 별 계 정 자 산	11.9	7.1	12.3	4.7	12.9	6.6	13.9	6.5	14.4	6.7
총 자 산	100.0	6.5	100.0	5.8	100.0	5.9	100.0	6.0	100.0	6.1
총 자 산 규 모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13		2,731,316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6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설계사의 비중이 줄고 임직원,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증가
-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대비 4.4%p 축소된 40.1%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FY2006 4/4분기 에는 FY2005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40%이하로 하락
 - 반면 방카슈랑스의 연간 비중은 전년대비 3.4%p 증가한 30.7%를 기록하였으며 FY2006 4/4분기 비중은 35.7%로 전년동기대비 9.5%p 큰 폭 상승
 - 임직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1.1%p 상승하여 22.5%를 기록하였으나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대비 0.4%p 축소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27.8	13.8	21.4	21.9	20.0	22.9	24.7	22.5
설 계 사	44.2	52.1	44.5	43.5	43.5	42.8	32.8	40.1
대 리 점	6.3	7.9	6.8	6.9	6.0	6.0	6.8	6.4
중 개 사	0.0	0.0	0.0	0.0	0.0	0.1	0.0	0.0
방카슈랑스	21.7	26.2	27.3	27.7	30.5	27.7	35.7	30.7
기 타	0.0	0.0	0.0	0.0	0.0	0.5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854	28,827	92,770	20,689	20,046	20,958	26,540	88,23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6 말 임직원수와 설계사수는 전년대비 각각 3.2%와 6.5% 증가한 26,868명, 131,850명을 나타낸 반면 대리점수는 5.3% 감소한 9,746개를 기록함.
- 임직원의 경우 FY2004 25,412명에서 FY2005 26,033명, FY2007 26,868명으로 2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설계사의 경우에는 FY2005 전년대비 9.6%감소한 후 FY2006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숫자상으로 FY2004 말 설계사수인 136,947명에는 미치지 못함.
 - 설계사의 성비로 볼 때 남성설계사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0.9%로 여성설계사(1.7%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하였으며, 이러한 남자설계사의 증가는 국내중소형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의 경우 FY2005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FY2006 1/4분기 10,812개를 정점으로 3분기 연속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5,807	26,033	26,051	26,432	26,604	26,868
설 계 사	124,494	123,850	125,542	127,346	130,140	131,850
대 리 점	9,391	10,290	10,812	10,341	10,110	9,746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김세중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회복 및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5.0% 증가한 29조 5,829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급차량 증가 및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여 전년대비 9.8% 성장한 9조 6,492억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 보험을 비롯한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1.5%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FY2006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56조 9,713억원을 기록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투자영업 이익 확대에 기인한 것임.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12.8	10.8	13.1	16.5	12.3	18.3	15.0
총자산	492,774	492,774	508,801	528,852	556,053	569,713	569,713
	0.7	13.4	3.3	3.9	5.1	2.5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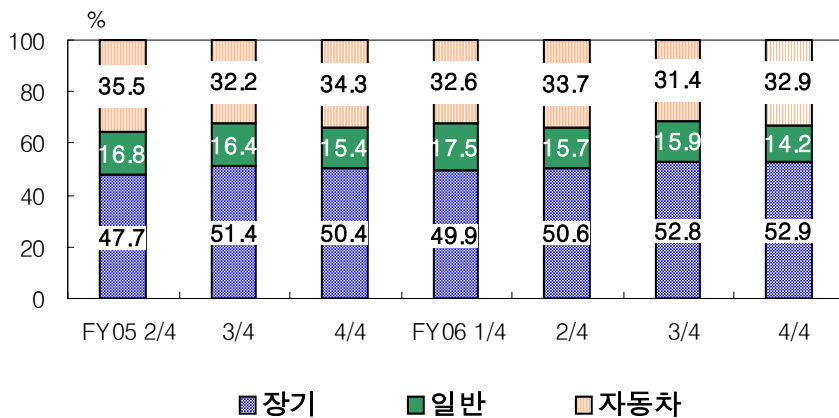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6 4/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2.9%, 자동차보험 32.9%, 일반손해보험 14.2%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높은 성장률 지속으로 전년대비 2.5%p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최근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각각 1.4%p, 1.2%p 감소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9조 6,492억원으로 전년대비 9.8% 성장률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및 직관시장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잇단 보험료 인상과 고급차량 증가로 인한 대당 보험료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은 FY2006 13.4%의 점유율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과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어 전년대비 21.5% 성장한 13조 6,80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FY200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부문별 성장률에서는 통합형보험이 전년대비 120.4%를 기록하였으며, 저축성보험이 34.0%, 상해 29.4%, 재물 3.2%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운전자보험과 질병보험에서는 전년대비 각각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24.2% 성장으로 원수보험료 성장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상해, 질병, 통합형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상승세가 꺾임.
- FY2006 보증보험은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신용보험의 판매 본격화 및 상품권보증보험 등 보험료 수입증가, 이행보증보험 등의 대출관련 보증시장 성장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한 1조 1,428억원을 나타냄.
- FY2006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9.9% 증가한 6,323억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냄.
- 선박보험을 비롯한 항공보험이 전년대비 각각 17.6%, 5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운송보험과 적하보험에서도 전년대비 각각 7.6%, 0.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화재보험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13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2006년 4월부터 적용된 공장, 일반, 주택물건의 보험요율 인하와 건설 및 투자부문의 성장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FY2006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부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9.1% 성장한 2조 4,987억원을 나타냈음.
- 상해보험이 전년대비 43.0% 성장한 6,579억원을 기록하여 고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기술보험과 책임보험은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각각 -1.1%,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85	3,243	756	716	902	758	3,132
	성장률	14.6	10.4	-4.8	-4.7	-1.2	-3.5	-3.4
	구성비	1.2	1.3	1.1	1.0	1.2	1.0	1.1
해 상	보험료	1,186	5,277	2,101	1,604	1,304	1,314	6,323
	성장률	4.4	4.1	50.2	13.6	1.9	10.9	19.9
	구성비	1.8	2.1	3.0	2.2	1.7	1.7	2.1
자동차	보험료	22,100	87,890	22,598	24,344	24,444	25,106	96,492
	성장률	6.1	3.1	5.7	10.3	9.4	13.6	9.8
	구성비	34.3	34.2	32.6	33.7	31.4	32.9	32.6
보 증	보험료	2,630	10,067	2,972	2,665	3,073	2,718	11,428
	성장률	15.9	11.6	31.8	11.5	10.1	3.4	13.5
	구성비	4.1	3.9	4.3	3.7	3.9	3.6	3.9
특 중	보험료	5,152	22,904	6,143	6,159	6,813	5,872	24,987
	성장률	14.3	12.4	6.9	7.2	8.8	14.0	9.1
	구성비	8.0	8.9	8.9	8.5	8.7	7.7	8.4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3	609	156	205	278	184	823
	성장률	-7.1	-23.5	20.9	43.1	69.9	6.4	35.2
	구성비	0.3	0.2	0.2	0.3	0.4	0.2	0.3
장 기	보험료	29,932	112,562	31,564	33,352	34,814	37,072	136,802
	성장률	18.3	16.8	19.3	21.6	21.2	23.9	21.5
	구성비	46.4	43.8	45.6	46.1	44.7	48.6	46.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89	6,976	1,836	1,884	2,119	2,136	7,975
	성장률	6.5	2.6	9.0	9.8	18.5	19.4	14.3
	구성비	2.8	2.7	2.7	2.6	2.7	2.8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752	7,707	1,133	1,370	4,216	1,149	7,868
	성장률	29.8	37.1	-18.1	234.5	-18.3	52.8	2.1
	구성비	1.2	3.0	1.6	1.9	5.4	1.5	2.7
계	보험료	64,498	257,235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성장률	12.8	10.8	13.1	16.5	12.3	18.3	15.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6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와 일반사계는 전년대비 시장점유율이 다소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71.0%로 나타났으며, 일반사계는 전년대비 0.2%p 감소한 94.6%를 기록함.
 - 반면, 외국사 및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각각 0.2%p, 0.6%p 성장한 1.4%, 3.0%의 점유율을 기록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0.1531을 보이면서 대형사와 일반사계의 시장점유율의 감소 및 외국사와 온라인 단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71.3	71.3	70.7	70.8	70.9	71.0	71.0
	일반사 계	94.8	94.8	94.3	94.6	94.5	94.6	94.6
	온라인단종사	2.4	2.4	2.5	2.7	2.8	3.0	3.0
	전 업 사	4.0	4.0	4.4	4.1	4.1	4.0	4.0
	외 국 사	1.2	1.2	1.3	1.4	1.4	1.4	1.4
허 핀 달 지 수		0.1557	0.1557	0.1519	0.1529	0.1532	0.1531	0.1531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7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6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 있어서는 투자영업이익과 기타수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이 -8,426억원으로 적자 폭이 심화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1% 감소한 1조 673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영업이익은 2조 2,395억원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 지속으로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손익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영업이익은 2조 2,395억원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71,114	231,078	62,032	127,173	194,983	266,230
	투자영업	19,477	26,358	6,497	12,926	19,984	28,556
	기 타	7,984	9,270	4,352	4,198	10,778	12,747
	계	198,574	266,706	72,880	144,297	225,745	307,533
총 비 용	보험영업	172,776	236,258	63,356	130,775	201,481	274,656
	투자영업	4,115	5,479	1,795	3,257	4,778	6,161
	기 타	8,733	10,251	4,193	3,811	8,617	10,543
	계	185,624	251,988	69,344	137,843	214,876	291,360
수 지 차	보험영업	-1,662	-5,180	-1,324	-3,602	-6,498	-8,426
	투자영업	15,361	20,879	4,702	9,669	15,207	22,395
	기 타	-750	-982	159	386	2,161	2,204
	계	12,950	14,717	3,536	6,453	10,869	16,173
법 인 세		2,727	2,844	1,055	1,864	3,233	5,501
당기순이익		10,223	11,873	2,532	4,589	7,637	10,673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6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102.3%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0.7%p, 0.6%p가 증가함.

□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78.6%로, 이는 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 상승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법규위반사면, 모형단속카메라 철거 등에 따른 사고율 증가(FY2005 12.9% → FY2006 13.5%) 및 정비공임 인상 등의 영향으로 FY2005 하반기 이후 손해율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종보험 및 보증보험의 손해율도 전년대비 각각 3.7%p, 20.5%p 증가함.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손해율	화재보험	41.2	40.9	48.6	40.7	40.2	39.6
	해상보험	49.8	52.0	51.3	50.3	46.4	52.1
	자동차보험	76.8	76.6	77.2	78.9	79.5	79.0
	보증보험	-1.0	2.9	16.2	10.5	21.5	23.4
	특종보험	48.0	51.6	48.5	55.8	56.8	55.3
	해외원보험	55.6	52.4	26.1	40.4	36.7	44.7
	장기보험	85.7	86.4	86.7	85.3	84.3	83.9
	개인연금	119.1	125.9	119.9	119.8	118.9	125.4
전 체		77.0	77.9	78.6	78.7	78.8	78.6
사업비율		22.9	23.2	22.6	23.2	23.5	23.8
합산비율		99.8	101.1	101.2	101.9	102.3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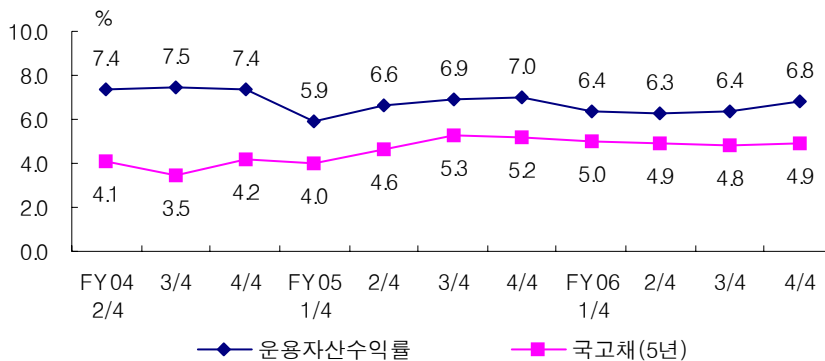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대비 0.2%p 감소한 6.8%를 기록하였으며, FY2005 4/4분기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지난 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됨.
- 손해보험회사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수익률은 전년대비 2.9%p 감소한 6.4%를 기록하였고, 주식 및 수익증권의 수익률에 있어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년대비 5.4%p 감소한 7.5%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증권 수익률도 2.1%p 감소한 7.0%를 기록함.
 - 만기보유증권은 전년대비 2.1%p 감소한 6.1%를 기록, 투자주식은 16.1%p 감소한 11.4%의 수익률을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36.3%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1.3%p

축소된 5.9%를 나타내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0.3%p 확대된 18.2%, 부동산은 0.8%p 감소한 6.6%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3%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0	5.2	4.7	4.2	4.6	4.6	4.5	4.7	5.0	4.6
유 가 증 권	55.8	9.9	54.8	6.5	55.6	6.2	54.9	6.4	54.6	7.1
○단기매매증권	7.9	12.9	6.3	7.7	6.1	7.8	6.1	8.1	6.2	7.5
- 주 식	0.3	176.3	0.3	31.9	0.3	34.0	0.3	45.9	0.3	48.7
- 채 권 등	5.5	9.7	4.9	6.8	4.6	7.3	4.0	7.5	4.0	6.8
- 수익증권	2.0	6.1	1.0	5.9	1.2	4.6	1.8	3.9	1.9	4.0
○매도가능증권	43.7	9.1	44.5	6.3	45.3	5.9	45.0	6.1	44.6	7.0
- 주 식	7.2	13.8	6.8	7.1	7.0	5.3	6.7	7.0	5.9	13.4
- 채 권 등	35.1	9.3	35.9	6.1	36.4	6.2	36.4	6.3	36.3	6.4
- 수익증권	1.5	20.9	1.7	5.8	2.0	6.9	2.0	5.8	2.4	6.5
○만기보유증권	3.4	8.2	3.4	6.4	3.4	6.1	3.1	6.2	2.9	6.1
- 채 권 등	3.4	8.2	3.4	6.4	3.3	6.1	3.0	6.2	2.9	6.1
○투자주식 ¹⁾	0.8	27.5	0.7	12.0	0.8	12.0	0.8	14.6	0.9	11.4
대 출 채 권	17.9	8.0	17.6	7.8	17.3	8.0	17.9	7.8	18.2	7.8
부 동 산	7.4	3.5	7.3	3.3	7.0	3.3	6.7	5.1	6.6	3.5
운 용 자 산 계	85.1	7.0	84.4	6.4	84.5	6.3	84.0	6.4	84.3	6.8
비 운 용 자 산	14.9	-	15.6	-	15.5	-	16.0	-	15.7	-
일반계정 자산 계	100	12.2	100.0	5.5	100.0	5.3	100.0	5.4	100.0	5.7
	(96.3)	-	(96.4)	-	(96.5)	-	(96.1)	-	(96.2)	-
특 별 계 정 자 산	3.7	-	3.6	-	3.5	-	3.9	-	3.8	-
총 자 산	100.0	5.9	100.0	5.3	100.0	5.1	100.0	5.2	100.0	5.5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6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12.7%를 기록하였음.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대비 1.4%p 확대된 4.8%를 기록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통해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1.4%p, 0.3%p 감소한 45.6%, 35.6%로 나타나, 신채널 성장에 따른 전통채널 비중의 상대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회사직급	28,894	30,336	9,694	18,875	29,029	36,508
	12.3	12.2	14.2	13.6	13.6	12.7
보험설계사	66,438	89,616	23,953	49,034	74,807	102,379
	35.8	35.9	35.2	35.3	35.2	35.6
대 리 점	87,361	117,211	30,988	63,081	96,627	131,298
	47.0	47.0	45.5	45.4	45.4	45.6
중개사	2,133	2,677	573	1,185	1,809	2,470
	1.1	1.1	0.8	0.9	0.9	0.9
방카슈랑스	5,999	8,370	2,679	6,317	9,579	13,907
	3.2	3.4	3.9	4.5	4.5	4.8
공동인수	954	1,318	238	564	949	1,398
	0.5	0.5	0.3	0.4	0.4	0.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6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생산성은 임직원을 비롯한 설계사 및 대리점의 모든 채널에서 뚜렷한 향상을 나타냄.

- 임직원의 생산성은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전년대비 20.2% 증가하여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점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관리 차원의 대리점수 축소로 인해 전년대비 15.5%의 증가세를 기록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5		FY2006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5,611	25,804	25,730	25,956	26,067	25,849
	89,390.5	117,526.8	37,677.6	72,718.1	111,364.2	141,235.8
보험설계사	75,728	72,116	74,230	74,823	76,390	73,408
	87,732.5	124,256.8	32,269.0	65,532.8	97,928.2	139,465.3
대 리 점	45,758	45,646	45,493	45,381	45,038	44,275
	190,919.3	256,782.2	68,115.8	139,002.4	214,545.7	296,551.9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지재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08.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개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4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 13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가급여 :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소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

-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됨.
 - *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로 잠정추계됨(직장근로자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2,600원(근로자부담분 기준))
 -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함.
 -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함(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함).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임.

- 절차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소속직원의 방문 →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 조사 후 '조사결과표' 작성 → 별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판정

* '08년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정부에서는 '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음.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

정부에서는
내년 7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

<소요재정 전망>

'08년 실시
대상자 수는
158천명,
소요재정은
8,402억원으로
전망

- '08년 중등증 이상(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
사회연구원 연구결과(노인인구의 3.1%)적용시 158천명 예상, 소
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

<표 1>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구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	59	99	158	4,477	3,071	854	8,402
2010	89	79	169	10,510	4,284	2,118	16,911
2015	106	94	200	12,418	5,067	2,516	20,001

주 : '08. 7. 1. 시행 관계로 '08년은 6개월분 적용(단, 초기투자비용 등은
제도도입전 국고지원)

<표 2>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5
건강보험료수입 ¹⁾	202,261	212,199	221,835	283,646
장기요양보험료수입 ²⁾	4,750	10,110	11,828	16,203
장기요양보험료율	4.7	4.8	5.3	5.7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단기 재정추계, 건보공단 내부자료, 2006.8

2)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 재정추계, 2007

주 : 물가상승률 3% 반영

*자료 : 보건복지부, '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7.4.3.

2.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배경>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상범위 확대
및 대리운전자
등의 가입률이
증가

- 금융감독원은 '06. 10월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 바 있음.
- 그 결과,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대리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06.10.13)

i) 대리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06.11. 1. 시행)
ii)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 활성화 지도
*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확대 등 개선내용>

① 기본계약 가입자(누구나 운전가능)의 보상범위 확대

- 대리운전 중 사고시 종전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보상되었으나, 약관 개선으로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표 2>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현행)
-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보상 *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한도	-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도 보상 * 대인Ⅱ : 무한보상,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보상

기본계약
가입자의
보상범위 확대

- 보상사례 예시
 - 대리운전중 대리운전자의 100% 과실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액(보험금)이 2억원인 경우
(개정전) 책임보험 1억원만 보상, 나머지 1억원은 차주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 부담
(개정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액 2억원을 전부 보상

②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 개발·판매 활성화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언제나
보상가능한
특약 상품
개발·판매

- 한편,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사고시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으로 기본계약 대비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 이에 따라,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언제나 보상가능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제도개선 효과 분석>

①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 증가 및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이용자
보험가입증가와
특약상품
판매가 활성화

- '07.3월 현재 대리운전 이용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5만 5천명으로 '06.9월말(2만 8천명) 대비 95.4%(2만 7천명) 증가하였음.
- 또한, '06.9월 5개 손보사만 동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07.3월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국내 손보사(AHA 제외)에서 이를 판매중임.

※ 보험료 수준도 연간 14,000원~25,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②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가

□ '07.3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 3천명으로 '06.9월(5만 8천명) 대비 8.0%(5천명)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07.3월 75.9%로 '06.9월의 69.8%에 비해 6.1%p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대리운전자 : '05년 말 현재 83,000명 추산(한국교통연구원)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자수 ÷ 전체 대리운전자수

<표 3>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06.9월	'07.3월	증감(율)
대리운전 이용자*	28,400	55,480	27,080 (95.4%)
대리운전자	58,232	62,919	4,687 (8.0%)
보험가입률(%)	69.8%	75.9%	6.1%p

* 대리운전 이용자 : 대리운전 이용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

<향후 추진계획>

소비자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개선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대리운전자 등의 보험가입 증가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의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하여 안내하는 방안 추진 등

*자료 : 금감원,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2007.4.26.

3. 금감위,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승인, 생보사 상장 길 열려

1) 개요

금감위의

개정안

승인으로 인해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짐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

○ 생보사 상장논의는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를 설치한 후 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 이번에 승인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승인을 통해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짐.

개정안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보사 상장 관련 의미가 모호했던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정

○ 지금까지 주권상장 신청법인은 자본금 등 계량적 상장 요건(상장규정§32)과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등 질적 심사 요건(상장규정§35)을 충족할 필요

○ 그러나,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 등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음.

○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에서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

2) 생보사 상장관련 그간 추진경과

□ 80년대 후반과 99년, 03년 모두 세 차례 생보사 상장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05년 하반기부터 다시 논의가 본격화

생보사 상장 논의는 80년대 이후 3차례 시도된 후 2005년 다시 논의됨	○ 80년대 후반 들어 일부 생보사들의 상장 추진이 있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상장 무산, 이 후 99년과 03년 두 차례 생보사 상장이 검토되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상장논의가 유보 ○ 2005년 하반기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생보사 상장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보사 상장 추진체계를 논의 ○ 그 결과 현행법과 규정체제하에서 생보사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결정하는 만큼 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후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개정안은 상장자문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거래소는 상장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 ○ 2006년 2월 거래소는 각계 중립적 전문가로 상장자문위를 구성, 2007년 1월 상장자문위는 현행 법체제와 글로벌스탠다드 등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거래소에 제출 ○ 거래소는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동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동 규정 개정승인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한 결과, 재경부는 이견이 없다는 공문 발송,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
생보사 상장은 보험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3) 생보사 상장 시 기대효과 □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보험산업적 측면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경영투명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으로 전망

생보사
상장은
소비자의
이익에도
공헌

- 또한 자본조달 및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금융회사 인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도 출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업공시가 강화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소액주주 등의 외부감시 기능이 제고되며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다양화, 정보수집 용이성, 자산운용 성과의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상장을 통해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가 진전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보험상품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따라 일반관리비 감소 등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의 공급을 기대
- 생보사 상장 시 각종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사 및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후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감소
- 대형화시 자산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고객에게 노후자산관리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효율적인 분산투자 및 자산운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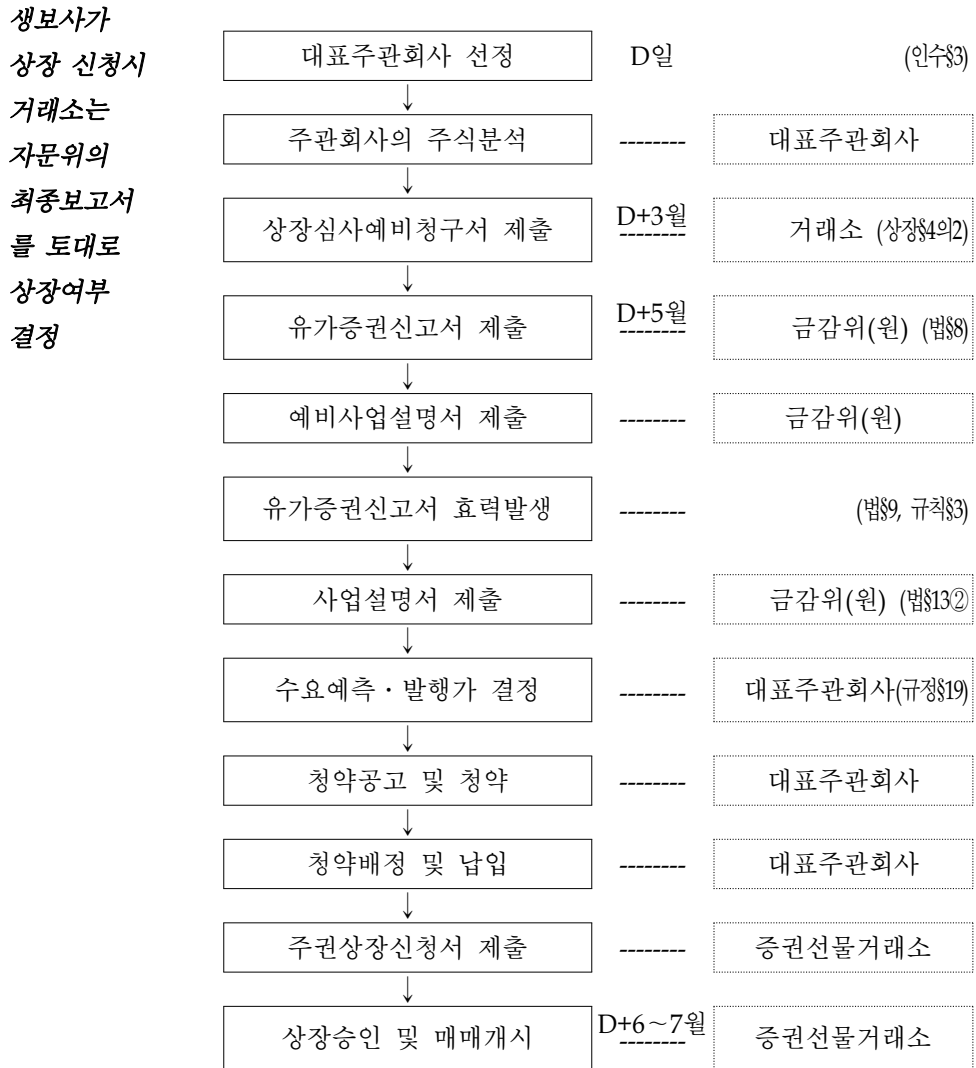
생보사
상장은
증권시장의
체질개선에
도 도움

- 생보사의 상장은 증권 시장에 있어서도 과잉유동성의 흡수,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생보사 상장 시 국내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과잉유동성 흡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량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4) 상장추진 절차

- 향후 개별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상장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

<그림 1> 거래소 상장 절차



*자료 : 금감위,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등 개정 승인, 2007.4.27
 금감위, 생보사 상장관련 설명자료, 2007.4.27

4. 손보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에 따라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 국회는 KAIST 실험실 폭발사고('03.5.), 보라(Bora)호 시험비행 사고('04.8.) 등 연구실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실험·시험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6.4.1.)
- ☐ 동 법에 의해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또한,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및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500만원 부과(정부의 보험료 지원 없음)
- ☐ 현재 손보사를 중심으로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중이며, 보험상품은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임

<법상 보험관련 주요 내용>

연구주체 장은
연구활동종사
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의무화(재물 및 배상책임손해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① 보험가입 의무화(법 §14 제1항)
 -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법 §14 제2항, 영 §14 제1항제1호)

② 피보험자의 범위(법 §2 제4호)

**대학·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
자를 대상**

- ☐ 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종사자 중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15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보상하는 손해(영 §15 제1항)

**연구실 발생
사고로 입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보상**

-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

④ 최저 보상금액(규칙 §7 및 고시)

**사고별로 급별
정액 보상하며,
보험가입
증빙서류는
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

- ☐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보상
- 실제 발생 의료비가 급별 최저한도(1급 450만원~14급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급별 최저한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4호)

⑤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영 §15 제3항 및 규칙 §8)

- ☐ 연구주체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⑥ 보험 미가입시 벌칙(법 §25 제1항)

보험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시장규모>

☐ 연구활동종사자 현황은 '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2,314명이며, 이 중 대학(원)생은 121,968명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시장규모는 약
30억 수준임

<표 1>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상근상당	연구원		연구보조 기능원	기타지원 업무종사자
			연구원	상근상당		
공공 연구기관	24,057	21,791	15,722	14,848	4,771	3,564
대 학	121,968	39,741	59,957	25,522	48,565	13,446
기업체	166,289	132,523	134,300	115,850	23,394	8,595
합 계	312,314	194,055	209,979	156,220	76,730	25,605

자료 : 2005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부

☐ 법상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대학(원)생이 되므로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연간 시장규모를 산출하면 약 30억 수준

o '04년 기준 대학교 시장규모 추정(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1,000만원 기준)

- 대학원생 : 39,741명 (상근기준) × 58,675원(2급기준) : 23억

- 대 학 생 : 82,227명(비상근기준) × 7,628원(2급기준) : 6억

*자료 : 금감원,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2007.4.27.

5. 풍수해보험, 보상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도개선 실시

-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힘.
 -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보험금액을 2,7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보험 가입면적에 따라 보상이 되는 실제 피해보상에 근접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
 -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하에서는 전파 및 반파의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에서는 전파 및 반파는 물론 소파(小破)까지 보험금이 지급

최저보험금액
을 상향조정,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 확대

- 최저 보험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고 정부의 위험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온실, 축사의 경우 70% 가입형 상품을 기본형 상품으로 설정하여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늘어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줌.
 - 또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시설물 기준단가를 현실 수준으로 인상(비닐하우스 : 15.4%, 축사 : 86.1%)하여 실질적인 가액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90%까지 대폭 확대하여 안전서비스 영역을 확대

풍수해보험지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본사업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임

- 소방방재청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 주택, 온실, 축사를 2008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보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재난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며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제작하여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할 계획임.

-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제작되면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인수(underwriting) 기법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식 등이 부모님을 위해 보험(일명, 효도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개정 중에 있음.
-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개발하여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시 예상되는 다수의 손해평가인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험학과 학생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표 1> 풍수해보험제도 주요개선 사항

구분	당초	개선
주택의 가입금액 산정방식 변경	○ 규모와 무관 최대 2,700만원 보상	○ 가입면적에 따라 보상되는 준실손 방식(㎡당 60만원)
보험료 지원비율	49~65%	58~65%
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주택》	○ 복구비의 50% 기준형 상품 - 위험보험료 50% 지원	○ 좌 동
	○ 복구비의 70% 기준형 상품 - 위험보험료 35.5% 지원	○ 복구비의 70% 기준형 상품 - 위험보험료 50% 지원
	○ 복구비의 90% 기준형 상품 - 위험보험료 28% 지원	○ 복구비의 90% 기준형 상품 - 위험보험료 40%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온실, 축사》	○ 복구비의 50% 기준형 상품(기본가입형)	○ 상품판매 폐지
	○ 복구비의 70% 기준형 상품(추가가입형) - 위험보험료 35.5% 지원	○ 복구비의 70% 기준형 상품(기본가입형) - 위험보험료 50% 지원
	○ 복구비의 90% 기준형 상품(추가가입형) - 위험보험료 28% 지원	○ 복구비의 90% 기준형 상품(추가가입형) - 위험보험료 40% 지원
시설물 기준단가 인상		○ 비닐하우스 : 15.4% ○ 축 사 : 86.1%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상향지원	○ 없음	○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료 지원(위험보험료 90% 지원)
비닐하우스의 단순비닐 파손 보상	○ 없음	○ 강풍 등에 의한 비닐파손 보상

주 :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

*자료 :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 도입 1주년, 2007.5.22

6. 재경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 투자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재경부는 5월 25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본 개정은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됨.
 - 개정안은 보험사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 개선,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 확대, 보험사기 억제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 현재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 중이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개정령 발표

기존 시행령은 보험사의 사모투자전 문회사 소유를 제한

-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와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 제한이 있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제한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그 특성상 자기자본 및 출자금 요건 적용이 곤란하였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
 -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국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요건심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심사받을 수는 없음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보험사 소유 규제 완화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

-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여타 금융법의 예와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하여는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와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토록 함.
- 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자회사에 대해 적용하기 곤란한 자기자본금 요건 등은 배제하도록 함

□ 본 개정령에서는 이와 함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공조를 강화

보험사기

대응차원의

관련기관 간

공조 활성화

근거규정 마련

-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나,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 공조는 미흡한 실정
- 이에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을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간 공동조사 등 업무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이번 개정령은 6월 18일 입법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

*자료 : 재경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7.5.25

7. 금감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은
정부의 특수직
종사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5월 29일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
 - 모범규준 제정은 정부가 지난해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어 옴.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최종안을 발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체결 시의
문제점들을
보완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은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
 -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는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였고, 해지요건이 모호해 임의해지가 가능하였음.
 - 또한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 임의 변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있어 왔음.

최소계약기간
보장과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모범규준은 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매년 자동갱신
 -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서면통보
 - 아울러 설계사의 위탁업무 범위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관리 및 계약체결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
- 해지요건이 모호하여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해지가 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지요건을 구체화
 -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부당 계약해지 방지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	○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 계약해지 요건 해당 시 우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선별적 구제가 가능토록 하며, 해지확정시는 해지예정일 15일 전에 서면통보 의무화
계약내용 개별 동의 및 불공정 행위 유형 명확화	□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계약변경 시 개별동의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화 ○ 위촉계약 체결 시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 의무화 ○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시 1개월 전 사전예고 및 보험설계사의 개별 동의 의무화, 그러나 변경내용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 ○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 ○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부과
모범규준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피해방지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대납 및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상의 부당행위가 감소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모범규준은 2007년 하반기 중 시행예정이며 개별 보험사는 표준위촉계약서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를 개정해야 함.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표준위촉계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자료 : 금감원,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규준」 마련, 2007.5.29.

8.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확대될

전망이나
운용상의
규제는 엄격

OECD주요국
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음

- ☐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한 엄격히 규제로 연금제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
 -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나, 적립금의 운용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안정성이 강조되어 자산운용이 엄격히 규제됨.
- ☐ OECD 주요국의 경우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방지 규제는 두고 있으나, 투자대상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규제 외에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 여부 및 투자한도를 규제
 - 미국·호주·영국·일본의 경우는 투자대상자산별 규제가 없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주식, 펀드, 예금 등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규제
 - 홍콩의 경우에도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투자가 모두 가능하며, 홍콩 달러 표시자산에 3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

<표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07.4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원리금 보장			실적배당		기타*	합계
	예적금	채권	보험	보험	간접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투자		
적립금액	3,329	7.7	5,422	476	1,297.3	259.7	10,791.8
(비중)	(30.8%)	(0.1%)	(50.2%)	(4.4%)	(12.0%)	(2.4%)	(100%)

*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제도 가입유인도 저하시킴.

적립금운용
규제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하

-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위험분산이 가능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도 직접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제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해
- DB형에 비해 DC형의 운용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DC형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표 2>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 현황

투자대상	DB형	DC형
▪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형펀드 ▪ 후순위 채권, 주가연계증권(최대손실40%이내) 등	30%	투자금지
▪ 혼합형(주식 40%~60%) 펀드 ▪ 고위험 채권펀드(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투자) 등	40%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50%이상)하는 펀드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OECD회원국 채권) 등		30%
▪ 예·적금, 국·공채, 투자적격채권 ▪ 채권형 펀드(주식편입 비율이 40%이하)		투자제한 없음

감독당국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자료 : 금감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2007.6.7

9. 손보사 재보험수지 적자원인과 개선방안

1) 국내 재보험 시장 현황

**부보손보사
의 출재보험
료 규모는
꾸준히 증가**

- 부보손보사의 출재보험료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중이 수재보험료 비중에 비해 상당히 큼.
 - 부보손보사 출재보험료 규모는 FY1999 1조4,869억원 이후 연평균 13.5%의 증가세를 보이며 FY2006 3/4분기('06.4월~12월) 현재 2조 6,439억원에 달함.
- FY2006 3/4분기 화재, 특종, 해상 등의 일반보험에서 재보험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4사에 비해 중소형사의 출재비율이 높은 편이며 해외출재율은 대형4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재보험 수지차 현황

**부보손보사의
재보험수지
는 FY2001
이후 계속
악화**

- 부보대상 손보사의 재보험 수지는 FY2001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FY2004 이후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부보대상 손해보험사(20개사)의 FY2006 3/4분기 수재보험, 출재보험 수지차는 각각 1,043억 원, 8,232억 원으로 재보험거래에서 7,190억 원의 재보험수지 적자 지속
 - 재보험 순수지차의 최근 5년동안(FY2001~FY2005) 누적 적자 규모는 3조 4,057억원에 달함

**재보험적자
규모 증가는
손보사의
손익악화
요인으로
작용**

- 그룹별로는 대형 4사의 재보험 수지 적자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목별로는 특종 및 해상 보험부문이 수지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 이러한 재보험수지 적자규모의 증가 추세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증, 가격경쟁 심화 등과 함께 손보사의 보험영업부문의 손익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재보험수지 중 출재수지는 FY2000 이후 계속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종, 해상에서의 적자가 85%를 차지하나 해외 출재손해율은 양호한 편임.

<표 1> 부보손보사 재보험 실적 동향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1/4~3/4)
보 험 료	수입보험료(A)	174,625	190,092	197,350	215,450	237,518	202,685
	출재보험료(B) (B/A)	22,039 (12.6)	26,006 (13.7)	27,346 (13.9)	29,034 (13.5)	32,342 (13.6)	26,439 (13.0)
	수재보험료(C) (C/A)	2,102 (1.2)	2,288 (1.2)	2,213 (1.1)	2,271 (1.1)	2,786 (1.2)	2,124 (1.0)
수 지 차	수재수지차(A)	27	602	736	606	84	1,043
	출재수지차(B)	-6,282	-7,542	-5,951	-7,596	-8,741	-8,232
	순수지차(A+B)	-6,255	-6,940	-5,215	-6,990	-8,657	-7,190

주 : 수재수지차=수재보험료(수익)-수재보험금(비용)-수재보험수수료(비용)

3) 재보험 수지적자의 원인

재보험 중요성
인식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이
적자원인으로
지적됨

- 재보험 수지적자는 재보험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재보험거래 계약에 따른 경쟁력 미흡, 수·출재거래 불균형 등에 의해 발생
 - 손보업계는 보험영업부문에서 대규모의 누적적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지 개선을 위한 회사차원의 검토가 미흡
 - 원보험회사는 시장개방 등 보험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다소 소홀
 - FY2006 3/4분기 부보손보사 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중은 13.0%인 반면, 수재보험료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국내 원수보험사의 출·수재거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재보험 방식
경직화,
담보력 활용
미비 등이
지적됨

- 추가적으로 출재율 조정 문제, 재보험 방식, 담보력 활용 미비, 재보험시장 자율화에 따른 대비책의 미흡 등의 원인을 꼽을 수 있음.
 - 출재보험료 대비 출재수지적자 규모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출재율은 FY2002 이후 1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대형보험사고 발생시 손실규모 축소를 위하여 비례와 비(非)비례 방식의 재보험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높은 재보험 비용을 부담

- 활용 가능한 담보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출재가 이루어진 점도 재보험수지 적자의 한 원인이며,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의 상호신뢰 부족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국내 보유가 가능한 우량물건을 독자적으로 해외 직접 출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보험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4) 개선방안

**재보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전환과
구조개선등이
필요**

- 재보험 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재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 고비용 재보험 구조개선, 출·수재보험 불균형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원수보험료 대신 보유보험료를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수지차 개선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관리 등 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재보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비비례재보험 비중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보험요율의 주도적 협상을 위한 자체적인 재보험 가격 모델의 구축 및 재보험분야 전문가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선진화된 위험인수기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위험당 보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량물건에 대한 수재 확대 노력을 통하여 출·수재거래 균형을 도모할 필요

**교환재보험
활성화,
생명보험
담보력 활용
등의 방안도
가능**

- 원수보험사간 교환재보험 활성화, 국내 재보험사의 조정기능 강화, 생명보험 담보력 활용을 통한 보유 증대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원보사간 교환재보험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환경이 유사한 원보사간의 재보험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 국내 우량물건의 해외 출재 억제 등을 통한 해외출재 수지 개선, 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가칭 『국내보험 보유확대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제3보험의 재보험뿐만 아니라 업계간 상호재보험을 허용함으로써 상호보유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재보험이 가능케 하여 국내 보유를 확대

*자료: 손보사 재보험수지 적자 원인 및 개선방안, 예금보험공사, 2007.6.12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보험정보와 구매에 있어 인터넷이용 최적화>

LIMRA는
보험정보 및
구매에 있어
소비자행태를
조사함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 LIMRA는 이전 24개월 이내에 개인보험 또는 연금상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려했던 25~69세 사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함.
- o 2,007명의 온라인패널에 대한 조사 외에 시카고와 덴버지역의 4개 소비자 초점그룹(focus group)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짐.
- ☐ 보험정보수집과 구매를 위한 채널로서의 인터넷이 유망해짐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탐구할 가치가 상승함.
- o 개인보험 또는 연금보험 구매과정에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소비자들의 상승하는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함.
- o 이번 조사는 보험회사가 신흥시장과 기존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구매를 위한 채널로서 인터넷이용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줌.
- o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 본 조사는 보험정보수집과 구매에 있어 최근 인터넷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향후 인터넷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인터넷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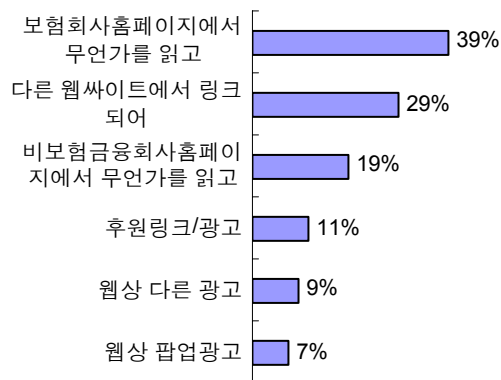
<보험정보수집과 구매를 위한 소비자 인터넷 이용행태>

개인보험,
연금상품구매
자의 7%가
온라인으로
보험구매

- 많은 소비자에 있어, 개인보험 또는 연금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온라인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음.
- 인적 판매망(모집인, 지인 등)은 개인보험과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이용도가 높은 채널이기는 하나, 구매자 전체의 7%는 인터넷으로 구매함(<그림 1>).

<그림 1> 개인보험 구매를 고려하게 한 온라인 항목

(온라인에 의해 구매한 7%중, 복수응답)



온라인정보
검색자의
상당수는
상품정보와
가격비교에
관심

- 소비자들은 보험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함.
- 특히 최근 개인보험 또는 연금상품의 구입을 고려했던 소비자의 36%는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상품정보와 가격비교에 초점이 맞춰짐(<표 1>).
- 웹사이트는 융통성이 크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함.
-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인적 채널을 선호하는데 이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며,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선호함.

<표 1> 최근 보험정보를 위한 인터넷이용 목적

(온라인정보 검색자(36%)의 검색목적, 복수응답)

상품정보검색	61%
가격비교	55%
보험회사조사	45%
가격조회	34%
회사등급, 재무건전성조사	27%

□ 소비자들 중 일부 그룹은 인터넷을 보다 선호함.

○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태도는 성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표 2>).

<표 2> 정보를 얻는 과정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

넷팬으로
분류된
그룹이
보험정보를
위한
인터넷이용의
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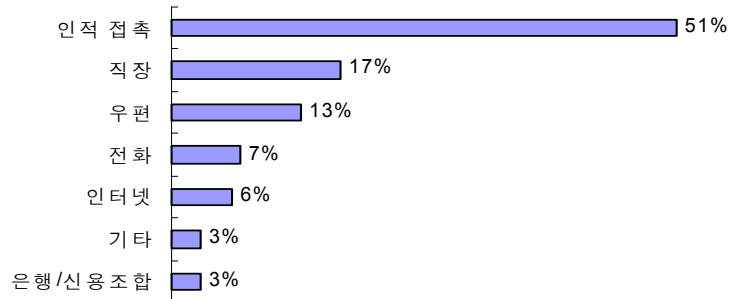
정보를 찾는 모든 응답자	36%
넷팬(net fans) - 고등교육, 고소득, 젊은 그룹이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보안에 대해 무관심함. 이들은 개인의 재무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좋아하며 재무활동에 인터넷이용을 열망, 지정모집인을 가장 적게 이용	64%
의식있는 열정가그룹 - 두 번째로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 그리고 두 번째로 젊은 그룹이며, 온라인보안에 대해 걱정하지만 온라인으로 금전적 활동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짐.	47%
걱정스런 이메일이용그룹 - 가장 낮은 소득자층, 온라인보안에 대해 가장 관심이 높고 온라인을 통한 금전적 활동을 꺼림. 가장 개인모집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	20%
노령 냉담자들 - 가장 노령의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 인터넷, 이메일, 온라인구매, 또는 온라인금융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 그룹	15%

○ 세분화된 그룹은 소비자들의 차이를 잘 나타내며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정보 또는 구매에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않는 반면, 다른 소비자들은 현재 인터넷을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용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

□ 소비자의 소수만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 상품을 구매함.

- 최근에 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6%만이 인터넷을 이용했으며(<그림 2>), 온라인구매자들은 편의성과 보다 나은 가격을 찾음.

<그림 2> 개인보험과 연금상품에 대한 구매방법



<장래 보험상품구매시 인터넷의 이용>

- 장래에 보험상품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데 있어 인터넷이용에 관심이 높음.

70%의
소비자들이
미래에
온라인을
이용해
보험정보를
얻을 것이라
조사됨

- 70%의 소비자들은 미래 구매시 상품, 가격, 신용등급, 그리고 보험회사정보를 인터넷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답함(<표 3>).
- 소비자들이 젊을수록 장래의 보험상품구매에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높다고 답함.

<표 3> 보험과 연금정보를 위한 인터넷이용방법

	총계	Gen X/Echo Boomers	Younger Boomers	Older Boomers	Silent Generation
가격비교	72	80	75	74	61*
상품정보검색	72	77	76	72	61*
고려대상회사조사	72	77	75	75	61*
회사등급/재무건전성 확인	71	74	75	71	61*
가격조회	64	69	67	63	57*
익명으로 가격조회	60	69	64	60	49*

* 보다 젊은 세대들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남.

<소비자에 대한 인터넷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

소비자들은
신뢰하는
웹사이트일수
록
광고·링크를
이용

-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소비자들은 수신동의를 한 짧은 형태의 이메일에 관심이 있음(<표 4>).
 - 이메일은 제목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야함.
 - 소비자들은 신뢰하는 웹사이트 일수록 광고와 링크를 적극적으로 클릭하는 성향이 있음.

<표 4> 보험정보검색시 가능할 것 같은 행동

요청한 이메일편지열기	86%
신뢰성있는 사이트에 링크열기	69%
흥미있는 제목의 이메일열기	60%
관심있는 상품검색을 위한 광고열기	57%
고려중인 보험회사홈페이지에서 모집인찾기	55%

차트와
시산기능의
분명한
상품정보
중요

-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야 함(<표 5, 6>).
 - 소비자들은 종종 보험상품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사야 할지 확신하지 못함.
 - 소비자들은 모집인을 만날 때조차도 모집인들의 권유보험상품이 소비자들의 필요에 기반한 것인지 모집인의 수수료에 기반한 것인지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차트와 시산기능을 포함한 분명한 상품정보는 궁극적인 구매채널과 상관없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유익하다고 느끼게 하고 구매가능성을 높여줌.

추가적인
보험가입으로
인해 정기보험
판매가 확대될
것임

-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보
안성을 제공해야함.
- 소비자의 3/4은 전화연결이 가능하거나, 현지사무소가 있고 개
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온라인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함.
- 소비자가 젊을수록 온라인구매를 촉진하기 쉬움(<표 5와 6>).

<표 5> 소비자들을 구매로 이끄는 요인들(%)

	합계	Gen X/Echo Boomers	Younger Boomers	Older Boomers	Silent Generation
상품이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상품	77	84	79	77	68
문의에 답할 수 있게 전화연결가능	75	77	77	76	69
나의 정보가 안전하다고 느낌	73	81	74	74	64
현지서비스사무소가 있음	73	79	75	73	67
나에게 모집인을 배정해줌	67	71	71	66	60
모집인을 통한 것보다 저렴	62	68	62	62	55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57	65	58	57	47
지인이 웹사이트를 소개	57	70	60	54	47

<표 6> 소비자 태도(%)

나는 인터넷상에 상품비교그래프를 게재하는 보험회사를 선호한다.	84
개인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찾고 있다.	82
나를 밝힐 필요가 없다면 온라인자산기능 또는 자산표를 이용하고 싶다.	77

기술지향적인
집단이 인터넷
선호

<의의>

- 보험정보와 구매 문제에 있어 다양한 집단 중에 기술지향적인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선호하며, 기타는 인터넷보다는 다른 채널을 선호함.
- 온라인판매를 촉구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있어서의 도전은 이러한 기술지향적인 소비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임.
- 보다 어려운 도전은 인터넷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확인하고 자사의 홈페이지로 이끄는 것임.
- 보험회사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단을 포기할 수 없으며, 많은 소비자들은 아직 보험정보와 구매에 있어 전통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찾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은 온라인경험이 긍정적일 경우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판매, 서비스, 또는 보상과정 중 어떤 때라도 소비자서비스가 부실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할 것임.

<향후 보험회사들이 고려해야할 사항>

- ① 금전적 문제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라.
- 보다 젊고 교육을 잘 받은 풍요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구매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마케팅역량을 집중하고 원하는 특성을 제공하는 이용하기 쉬운 웹사이트로 접근해야 함.
- ② 사적인 느낌을 유지하되 정보, 구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사용수단을 제공하고 촉진하라.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단을 찾아야 함.

- ③ 자사의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홍보하라.
 - 보험회사들은 온라인보험정보를 온라인광고와 서치엔진마케팅과 같은 마케팅을 통해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텔레비전캠페인, 신문 또는 잡지광고, 또는 우편물광고 등 인터넷이외의 마케팅수단을 통해 소비자들을 자사웹사이트로 유도해야 함.
- ④ 온라인 정보검색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온라인이용경험을 제공하라.
 - 상품설명, 비교차트, 그리고 시산기능을 제공해야함.
- ⑤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라.
 - 편의성과 디자인측면에서 다른 보험회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
- ⑥ 온라인보안성을 확보하라.
 - 온라인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접속한 후 전화, 메일, 혹은 모집인과 같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⑦ 온라인상 세대적 선호를 고려하라.
 - 60대 이상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보험정보를 찾거나 구매하지 않지만 많은 젊은 소비자들은 이와 반대임.
- ⑧ E-마케팅이 적절히 수행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임.
 - 이메일뉴스는 내용이 짧고 원하는 정보와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가 수신을 동의했을 경우에만 유의하고, 잘 설계된 메일제목은 이메일을 읽도록 유도함.

* 자료 : LIMRA, "Optimizing Opportunities With Online Consumers: Consumer Internet Use for Insurance Information and Purchase (2007)", 2007.3.1.

(김진익 선임연구원)

<비영리법인 보험시장 동향>

- 본보고서는 28개 보험회사들의 비영리법인 보험료, 자산 그리고 가입자(기업연금제도인 403(b), 457 Government, 그리고 기타 비영리법인 시장) 현황을 조사함.
- 조사참여회사들은 보험료, 자산, 그리고 시장별 총가입자 등을 포함하는 회사차원의 기밀자료를 제출함.
- LIMRA는 이들 조사대상 회사들의 자산이 2007년 3월 31일자로 403(b)와 574 Government 자산의 92%를 대표한다고 추계함.
- * 403(b) : 교육기관과 일정한 면세기관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 * 457 Government : 주정부기관 종업원대상의 비직격 거치보상제도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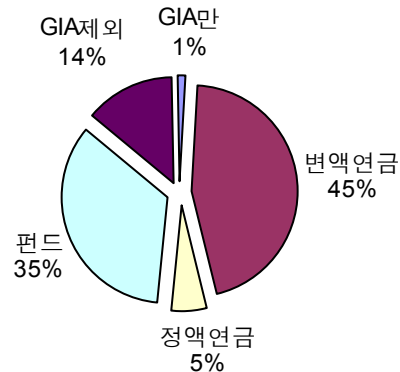
- 2007년 1/4분기 총비영리법인 보험료는 140억달러 이상이었음(<표 1>).
- 1/4분기 신규가입자는 총보험가입자의 1.5%를 차지하며, 1/4분기말 총 비영리법인 보험자산은 9,220억달러 이상이었음.
- 2007년 1/4분기 총 비영리법인 보험료 중 45%가 변액연금이었음(<그림 1>).
- 변액연금 중 변액계정과 정액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부자료에 의하면 12개 보험회사 중 77%는 변액계정에 예치하고 있음.

<표 1> 총 비영리보험시장*

구 분	2007년 1/4분기
총보험료(천달러)	14,529,953
총가입자	19,569,985
총자산(천달러)	922,650,401

주 : * 총보험료, 가입자, 자산은 27개 회사자료에 기초

<그림 1> 투자상품별 비영리법인 보험료(23개사)



<보험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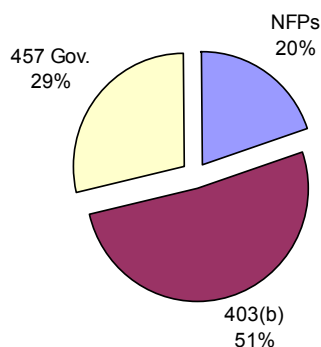
총비영리법인의 2007년 1/4분기 수입보험료는 140억달러 이상

- 총 비영리법인 보험료에는 403(b), 457 Government, 그리고 기타 비영리법인 보험료가 포함됨.
- 다음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보험료 정보임.
 - 2007년 1/4분기 유형별로 보험료를 구분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보험료의 51%가 403(b)이었으며, 29%가 457 Government제도, 20%가 기타 비영리제도였음(그림 2).
 - 2007년 1/4분기동안 50억달러 이상이 403(b)제도로 유입되었으며, 이중 변액연금은 39% 차지하고 하위구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료의 85%가 변액계정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1/4분기 거의 30억달러가 457 Government제도로 유입되었고(<표 3> 세부자료가 제공된 경우, 변액연금보험료의 73%가 변액계정으로 유입됨.

2007년
1/4분기,
403(b)제도의
보험료가
51%를 차지

- o 2007년 1/4분기 20억달러 이상이 기타 비영리법인제도로 유입되고(<표 4>) 펀드는 이 보험료의 59%를 차지함.
- 기타 비영리법인 보험료는 401(a), 401(k) 비영리, 457 education, 그리고 기타 비영리제도를 포함
 - * 401(a) : 403(b) healthcare, 기타 비영리퇴직연금제도와 공동으로 인수되는 퇴직연금제도
 - * 401(k) 비영리 : healthcare, 기타 비영리법인제도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
 - * 457 education/기타 비영리 : K-12, 대학교, 면세기관종업원을 위한 보충적 퇴직연금제도

<그림 2> 제도유형별 비영리법인 보험료(24개사)



<표 2> 투자상품별 403(b) 보험료(23개사)

범 주	분기실적(천달러)
변액연금	1,426,965
정액연금*	532,660
펀드	1,299,785
GIA 제외	302,423
GIA 만	82,860
총계**	5,110,130

주 : * 총 403(b) 보험료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1개회사포함.

** 제도유형별 보험료로 구분할 수 없는 2개사 포함하며, GIA는 Guaranteed Interest Account임.

<표 3> 투자상품별 457 Government보험료(16개사)

범 주	천달러
변액연금	254,972
정액연금	7,835
펀드	1,791,113
GIA 제외	803,852
GIA 만	55,239
합계*	2,937,943

주 : * 제도유형별 보험료로 구분할 수 없는 2개사 포함.

<표 4> 상품유형별 기타 NFP 보험료(19개사)

범 주	천달러
변액연금	196,182
정액연금	10,548
펀드	1,117,027
GIA 제외	536,558
GIA 만	43,839
합계*	2,006,911

주 : * 제도유형별 보험료로 구분할 수 없는 1개사 포함하며,
NFP : Not-for-Profit임.

<가입자와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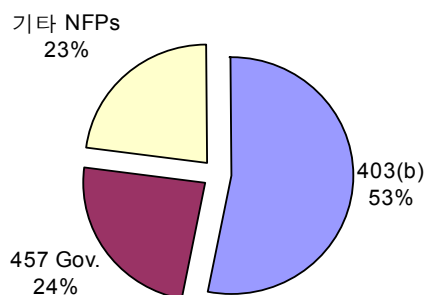
총가입자는
19백만명
이상이며,
신규가입자는
이중 15%를
차지

- 2007년 3월 31일 현재, 비영리법인제도 가입자는 1,900만명 이상임(<표 5>).
- 1/4분기 29만 4천명 이상이 신규가입자로 비영리법인제도로 들어왔음.
- 제도유형별 신규가입자 자료를 제출한 보험회사의 경우, 신가입자의 46%가 403(b)제도, 40%는 457 Government제도, 그리고 14%는 기타 비영리법인제도에 가입함.
- 신규가입자는 조사된 총가입자중 15%를 차지함.

비영리법인제
도에 속하는
자산은
2,200억달러
이상

- 제도유형별로 총가입자 정보를 제공한 회사들 중에 53%는 403(b), 24%는 457 Government제도, 그리고 23%가 기타 비영리법인제도로 구분됨(<그림 3>).
- 비영리법인제도에 속하는 총자산은 2007년 1/4분기말 현재 9조 2,200억달러 이상임(<표 6>).
- 자산은 지난 2006년 3월 31일 이후 거의 11% 증가하였으며, 유형별 자산자료를 제공한 회사들 중에 자산의 50%가 403(b) 제도, 25%가 457 Government제도, 그리고 25%가 기타 비영리법인제도로 구분됨(<그림 4>).

<그림 3> 제도유형별 비영리법인 가입자
(3월 31일, 2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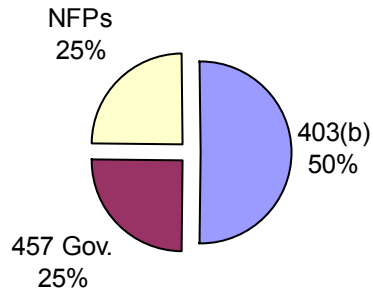


<표 5> 제도유형별 총가입자

범 주	3월 31일말	회사수
403(b)	8,265,565	23
457 Government	3,703,970	17
기타 비영리법인	3,583,971	20
총가입자*	19,569,985	27

주 : * 제도유형별 보험료로 구분할 수 없는 회사들 포함.

<그림 4> 제도유형별 비영리법인 자산(3월 31일 현재, 24개사)



<표 6> 제도유형별 자산

범 주	3월 31일말(천달러)	회사수
403(b)	256,912,135	23
457 Government	129,096,335	17
기타 비영리법인	129,867,569	20
총자산*	922,650,401	27

주 : *는 제도유형별 보험료로 구분할 수 없는 회사들 포함.

<세분시장현황>

□ 403(b) 시장세분

- 상당비율의 보험료(40%)가 병원과 보건시장으로 구분되는 반면, 자산의 52%는 대학시장으로 분류되고, K-12 시장은 1/4분기 보험료의 38%, 총자산의 1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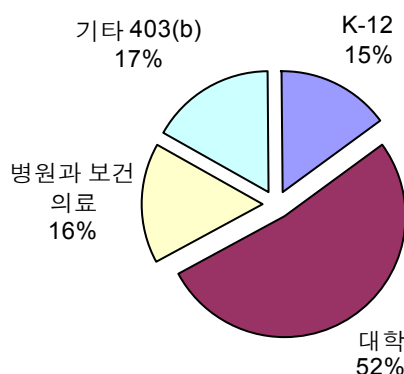
□ 기타 비영리법인 시장세분

- 기타 비영리법인시장내에서 총가입자의 거의 절반(48%)과 자산의 상당비율(40%)이 401(b)제도임.
- 1/4분기 기타 비영리법인시장에서 401(a)과 401(k)은 각각 37%와 48%를 차지함.

제도별로
보험료비중과
자산비중이
틀림

- 병원과 보건의장구분(403(b)제도 제외)
- 상당수의 가입자(49%)가 401(b)시장에 있으나, 자산비율은 32%로 적음.
 - 401(k) 병원과 보건의장은 가입자의 48%, 자산의 55%를 차지함.

<그림 5> 403(b)시장 자산구분(3월 31일, 18개사)



<표 7> 403(b) 세분시장(1/4분기)

범주	보험료(달러)	자산(달러)	가입자
K-12	1,748,548	97,777,472	3,014,654
대학교	503,094	327,619,700	947,881
병원과 보건의료	1,853,672	102,827,335	2,919,170
기타 403(b)	520,713	105,755,679	1,004,560

주 : 16개사가 보험료자료제출, 18개사가 자산자료 제출, 17개사 가입자 자료제출.

<표 8> 기타 비영리 세분시장(1/4분기, 15개사)

범 주	보험료(달러)	자산(달러)	가입자
401(a)	579,013	34,653,201	1,190,522
457 교육(K-12)	68,958	1,134,271	86,085
457 교육(대학교)	10,313	710,614	40,500
401(k) NFP	751,840	31,425,172	849,060
기타 NFP	146,842	18,950,846	339,515

주 : 16개사가 보험료자료제출, 17개사가 자산자료 제출, 17개사 가입자자료제출.

<표 9> 병원과 보건의료 시장세분(1/4분기)

범주	보험료(달러)	자산(달러)	가입자
401(a)	104,032	9,379,730	500,877
401(k)	268,080	16,199,457	492,876
457	20,243	1,294,038	35,220
재단	1	2,584	137
기타 병원과 보건의료	38,862	2,346,963	4,147

주 : 7개사가 보험료자료제출, 8개사가 자산자료 제출, 8개사가 가입자자료 제출.

* 자료 : LIMRA, "Not-for-Profit Market", First Quarter 2007.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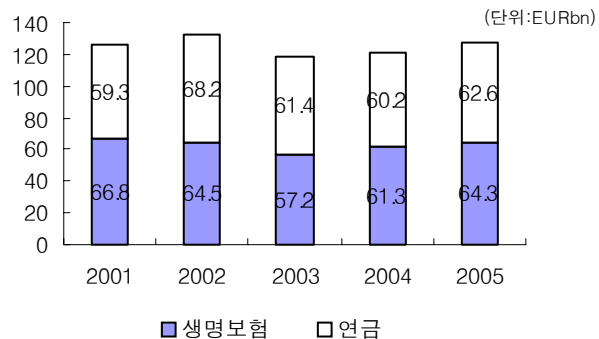
<2006 유럽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 성장추이 및 전망>

① 영국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임

- Datamonitor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입보험료의 미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2010년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연금성장률에 힘입어 연평균성장률이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2001년~2005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0.2%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기록함.

<그림 1> 최근 5년간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추이



<표 1> 최근 5년간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실적

(단위 : EUR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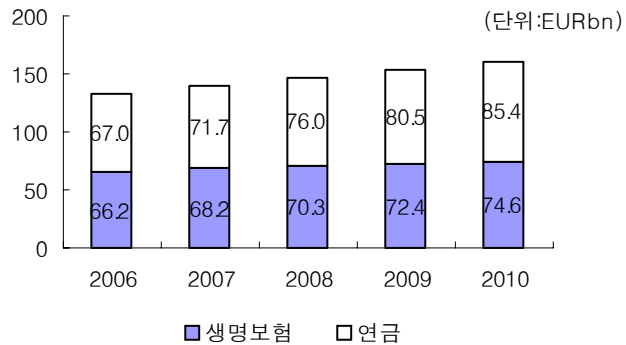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66,811	64,452	57,164	61,256	64,318	-0.9
연금	59,336	68,160	61,392	60,202	62,610	1.4
계	126,147	132,612	118,556	121,458	126,928	0.2

투자형 상품이
우위를 점하는
추세임

향후 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전통형/투자연계형 분류시 각각 45%, 55%의 비중을 보이며, 단체형/개인형 분류에 따르면 각각 27%,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시장예측에 대해서는 연금에의 투자 증대에 따라 2006년~2010년 생명보험 및 연금의 연평균 보험료성장률은 4.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향후 5년간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표 2> 향후 5년간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단위 : EUR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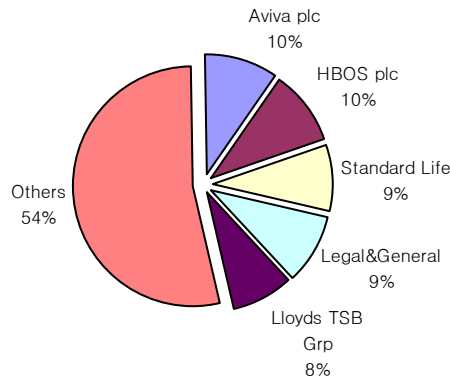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66,248	68,235	70,282	72,391	74,563	3.0
연금	66,993	71,683	75,984	80,543	85,375	6.2
계	133,241	139,918	146,266	152,934	159,938	4.7

- 영국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42%가 영국 법인이며, EEA(Europe Economic Association)에 본사를 둔 회사가 31%, Lloyds 법인이 23%, Non-EEA 회사가 4%를 차지함.
- 판매채널은 주로 은행연계망이나 재정설계사에 주로 의존함.

- 수입보험료 규모로는 상위 5개사가 46%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
이 46%로
시장집중도
가 큰 편임

<그림 3> 영국 생명보험 및 연금의 사별 보험료 점유비



- 영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낮은 물가상승률, 장기저축성보험과의 경쟁, 연금규제제도의 개혁 등의 시장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M&A를 추구함으로써 시장집중화 전략을 꾀하여야 함.

자료 : Datamonitor, "Market Guide: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the UK 2006", 20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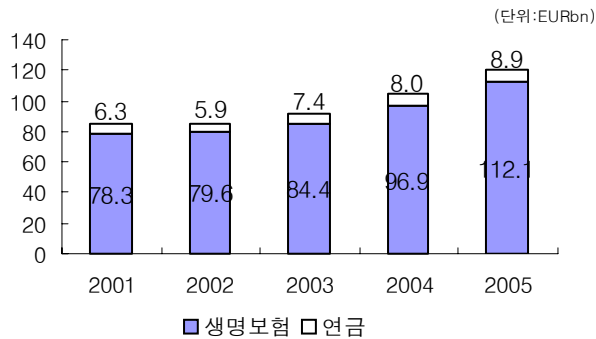
② 프랑스

프랑스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생명보험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시현

- 프랑스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9.4%로, 2005년 총 수입보험료의 93%가 생명보험의 보험료 수입임.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총 보험료 규모 중 90%를 차지하는 개인형 보험이 단체형에 비해 성장률이 높으며, 전통형과 투자연계형의 비중은 각각 78%, 22%로 전통형이 우세하지만 최근 투자연계형의 보험료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전통형상품
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
투자형이
증가추세

<그림 4> 최근 5년간 프랑스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추이



<표 3> 최근 5년간 프랑스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실적

(단위 : EUR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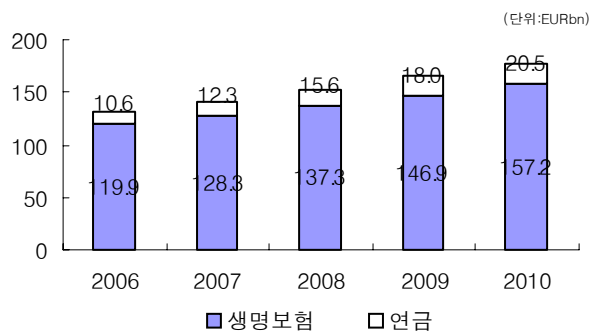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78,300	79,600	84,400	96,900	112,100	9.4
연금	6,300	5,900	7,400	8,000	8,900	9.0
계	84,600	85,500	91,800	104,900	121,000	9.4

□ 향후 5년간 수입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은 8%가 될 것으로 예측됨.

향후 연금의
성장률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연금의 성장률이 꾸준히 확대되어 2010년에는 연금의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향후 5년간 프랑스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표 4> 향후 5년간 프랑스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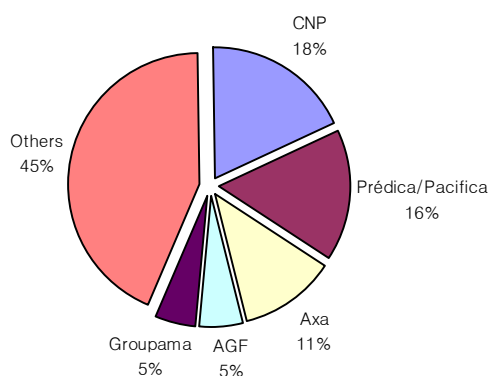
(단위 : EURm,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성장률
생명보험	119,947	128,343	137,327	146,940	157,226	7.0
연금	10,579	12,337	15,593	17,971	20,511	18.0
계	130,526	140,680	152,921	164,911	177,737	8.0

유럽 5개국중
시장집중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프랑스의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회사는 86%가 프랑스계 회사이며,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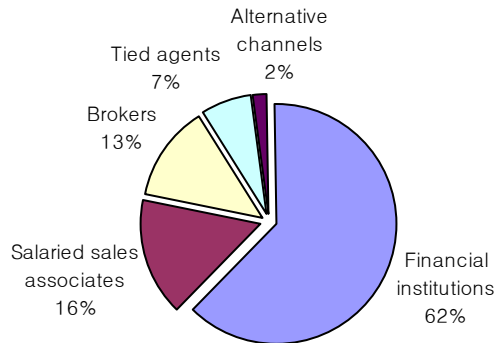
<그림 6> 프랑스 생명보험 및 연금의 사별 보험료 점유비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부분 의존

-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채널이 62%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전업판매 조직(salaried sales associated, 16%), 브로커(13%), 전속대리점(7%), 제휴판매(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프랑스 생명보험 및 Capital redemption의 판매채널별 보험료 점유비



자료 : Datamonitor, "Market Guide: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France 2006", 2007.3.

③ 독일

□ 독일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주로 연금에서의 성장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독일은 최근
연금시장의
성장폭이
크게 나타남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총 보험료 규모 중 개인형 상품이 85%를 차지하며 최근 단체형 상품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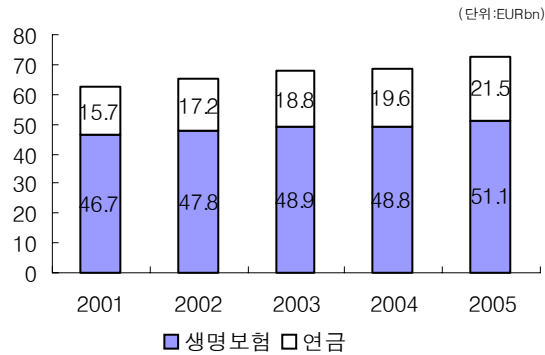
전통형 상품
비중이

○ 전통형과 투자형의 비중은 각각 89%, 11%로 전통형이 우세하지만 최근 투자형 상품에서의 보험료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압도적이나
투자형도
증가추세를
보임

○ 노후소득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자로 연금계약을 제외한 신규 생명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수입의 감소효과를 가져옴.

<그림 8> 최근 5년간 독일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추이



<표 5> 최근 5년간 독일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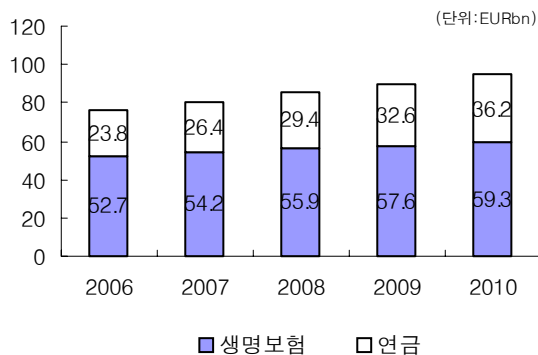
(단위 : EURm,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46,668	47,829	48,862	48,803	51,132	2.3
연금	15,719	17,229	18,794	19,599	21,465	8.1
계	62,387	65,058	67,656	68,402	72,597	3.9

향후에도
연금에서의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

-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연금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세 호조에 힘입어 5.7%로 전망됨.

<그림 9> 향후 5년간 독일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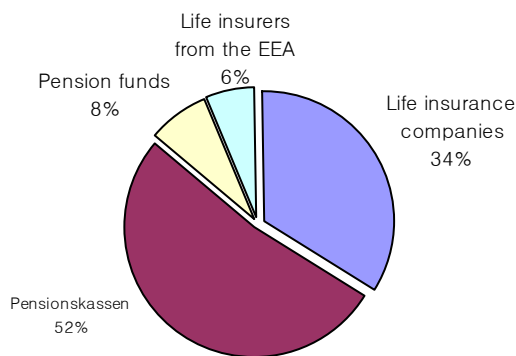
<표 6> 향후 5년간 독일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단위 : EURm,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52,667	54,248	55,876	57,553	59,281	3.0
연금	23,827	26,449	29,360	32,590	36,176	11.0
계	76,494	80,697	85,236	90,143	95,457	5.7

- 독일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을 판매하는 회사 수에 따른 점유비는 기업연금기금(Pensionskassen)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국내 생명보험회사(34%), 연금기금(8%), EEA 생명보험회사(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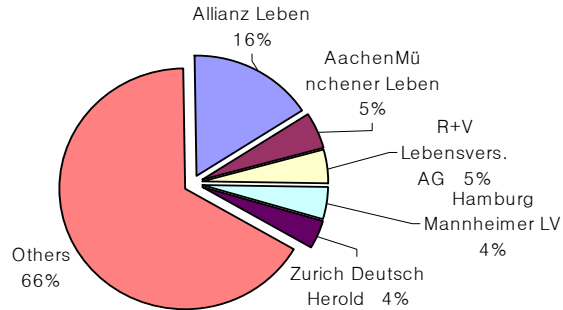
<그림 10> 독일 생명보험 및 연금 판매회사 수에 따른 점유비



- 2005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점유비를 살펴볼 때 상위 5개사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독일 생명보험회사별 보험료 점유비

상위 5사
비중이 34%로
유럽 5개국중
시장집중도가
가장 낮음



자료 : Datamonitor, "Market Guide: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Germany 2006", 20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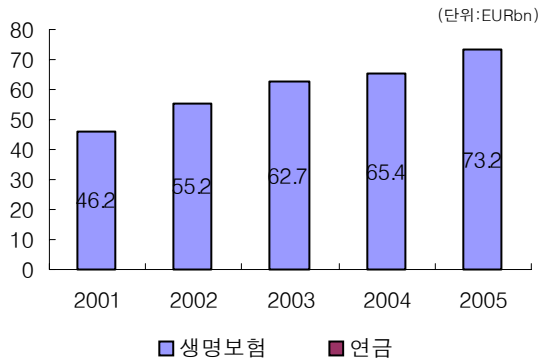
④ 이태리

이태리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고성장세를
보이나 연금의
비중은 매우
미미

□ 이태리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12.2%로, 연금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이 특징임.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보험료 비중은 0.4%에 그침.

<그림 12> 최근 5년간 이태리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추이



투자형 상품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역트렌드
현상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개인형 상품과 단체형 상품의 비중은 각각 90%, 10%로 나타남.
- 투자형 상품과 전통형 상품의 비중은 각각 36%, 64%로, 최근 5년간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이태리 투자자들은 반환금이 보증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10년전 트렌드의 역전현상임.

<표 7> 최근 5년간 이태리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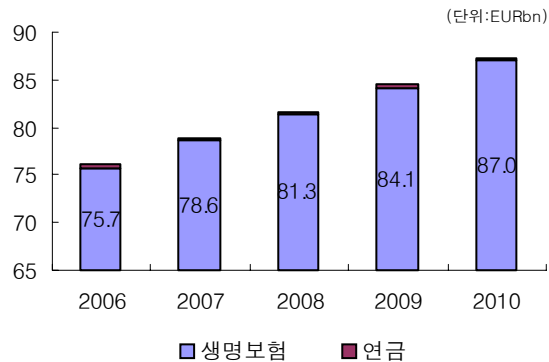
(단위 : EURm,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46,238	55,170	62,652	65,429	73,154	12.2
연금	91	124	128	198	317	36.6
계	46,329	55,294	62,780	65,627	73,471	12.2

향후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생명보험이나 연금시장 모두 성장률이 다소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향후 5년간 이태리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표 8> 향후 5년간 이태리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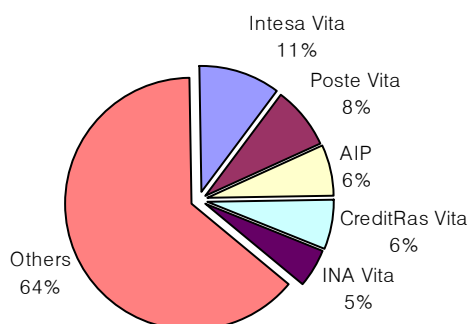
(단위 : EURm,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75,732	78,557	81,326	84,110	86,988	3.5
연금	323	330	339	346	353	2.2
계	76,055	78,887	81,665	84,456	87,341	3.5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편임

- 이태리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84.3%가 이태리 국내사이며,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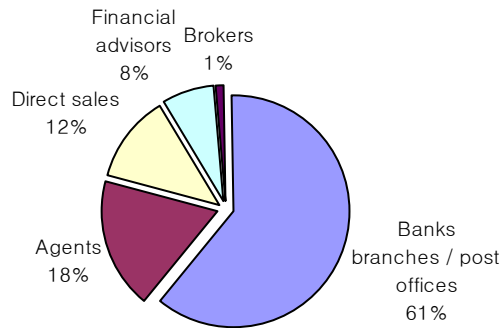
<그림 14> 이태리 생명보험 회사별 보험료 점유비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이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의 우위를 가짐

- 판매채널은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은행/우체국을 통한 판매가 61%로 가장 비중이 높고, 대리점(18%), 직판(12%), 재무상담사(8%), 브로커(1%)의 순으로 나타남.
- 2001년에는 직판채널과 재무상담사의 판매 비중이 각각 8.8%, 11.2%였으나, 투자형 상품판매가 최근 감소하면서 투자형 상품의 주요 채널인 재무상담사의 비중이 축소됨.
 - 2005년에 개인형 연금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58.6%로 가장 비중이 컸던 반면, 단체형 연금은 90.5%가 직판채널을 통해 판매됨.

<그림 15> 이태리 생명보험의 판매채널별 보험료 점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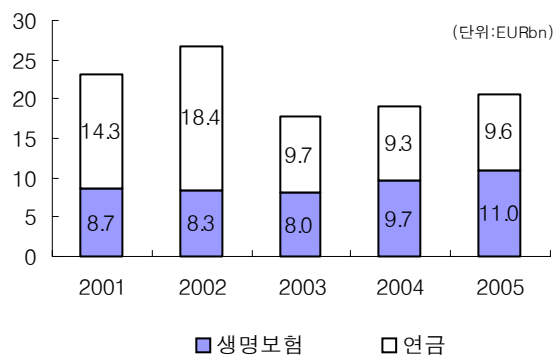
자료 : Datamonitor, "Market Guide: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Italy 2006", 2007.4.

⑤ 스페인

스페인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은
최근 성장률이
정체됨

- 스페인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2.8%로 2003년 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성장률이 계속 정체되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그림 16> 최근 5년간 스페인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추이



- 2002년까지 40% 이상을 차지하던 단체형 상품은 2003년 이후 급감하여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개인형 상품과 단체형 상품의 비중은 각각 81%, 19%로 나타남.
-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투자형 상품과 전통형 상품의 비중은 각각 12%, 88%로 나타남.

<표 9> 최근 5년간 스페인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실적

(단위 : EURm,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8,749	8,339	8,025	9,697	10,952	5.8
연금	14,279	18,411	9,716	9,275	9,579	-9.5
계	23,028	26,750	17,741	18,972	20,531	-2.8

향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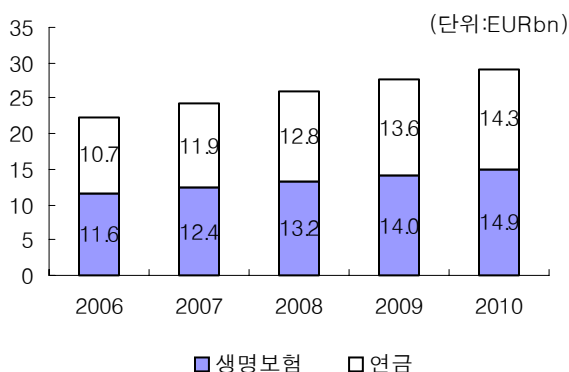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9%로 생명보험과 연금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7> 향후 5년간 스페인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표 10> 향후 5년간 스페인 생명보험 및 연금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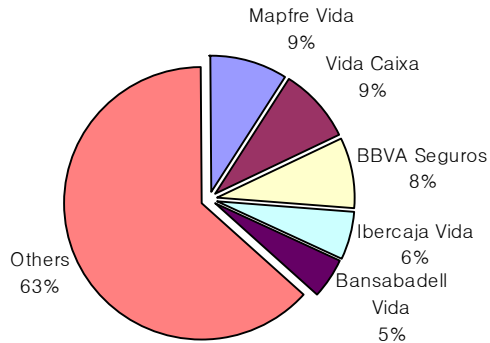
(단위 : EURm,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성장률
생명보험	11,623	12,370	13,155	14,002	14,884	6.4
연금	10,716	11,940	12,786	13,559	14,254	7.4
계	22,339	24,310	25,941	27,561	29,138	6.9

상위 5사
점유율
37%로
시장집중도
는 높지 않은
편임

- 스페인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수는 생명보험회사
사가 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호저축조합(mutual provident
societies)이 31%로 많으며,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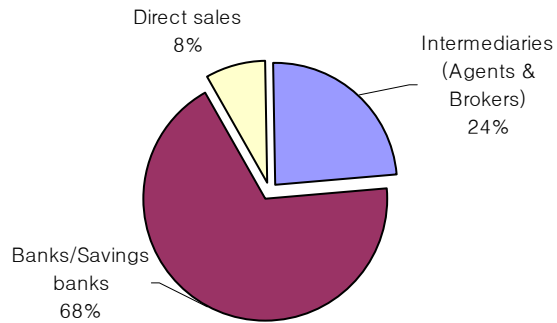
<그림 18> 스페인 생명보험 회사별 보험료 점유비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유럽 5개국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판매채널은 2005년 보험료 기준으로 은행을 통한 판매가 68%로 가
장 비중이 높고, 중개인(대리점이나 브로커)이 24%, 직판채널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생명보험의 판매비중은 2.4%로 기대보다 느린 속
도이기는 하나, 이를 이용한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개인형 상품은 주로 은행(70.9%)에 의한 판매에 의존하며, 그 다
음으로 보험대리점(14.9%)을 통한 판매가 많음.
 - 단체형 상품의 판매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53.4%, 보험브
로커 15.8%, 직판채널 15.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9> 스페인 생명보험의 판매채널별 보험료 점유비



자료 : Datamonitor, "Market Guide: Life Insurance and Pensions in Spain 2006", 2007.4.

(지재원 선임연구원)

3. 일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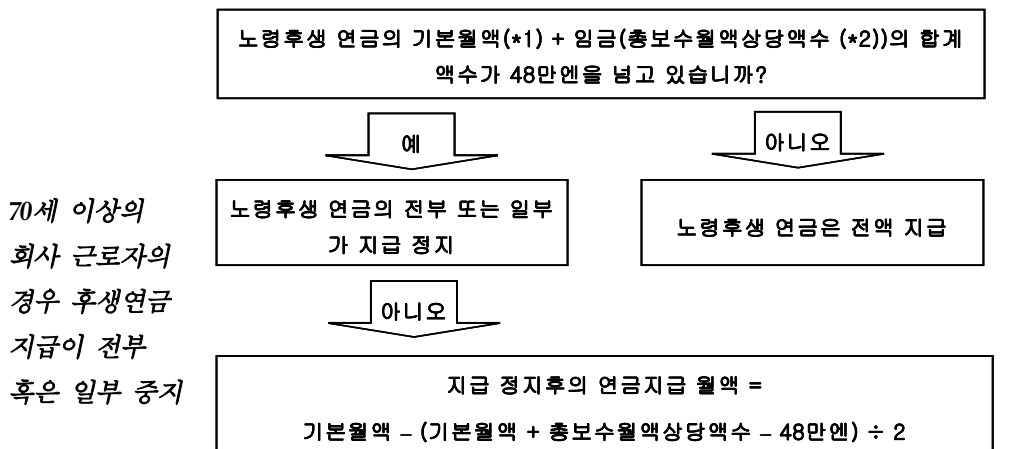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연금제도 내용>

- ☐ 2004년 개정된 연금제도에 이어 2007년 4월 1일부터 연금제도의 일부가 바뀌게 되며,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7년 4월1일
부터 연금제도
내용 일부가
개정

- ① 70세 이상의 회사 근로자의 경우 노령후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 지급이 중지될 경우가 있음.
- ☐ 70세 이상의 근로자가 후생연금 적용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 금액이 48만엔을 상회할 경우에는 노령후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됨(단, 1937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그림 1> 지급정지후의 연금지급 월액표



70세 이상의
회사 근로자의
경우 후생연금
지급이 전부
혹은 일부 중지

*1 이달액수 : 가급연금액수를 제외한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월액
*2 총보수월액상당액수 : (그 달의 표준보수월액상당액수) + (이전월 1년간의 표준상여액수 상당액수(이전월 1년간의 보너스)) ÷ 12

ex) 기본월액이 8만엔, 총보수월액상당액수가 42만엔일 경우, 1만엔의 노령후생연금이 지급 정지되고 연금지급 월액은 7만엔이 됨.

$$\Rightarrow 8\text{만엔} - (8\text{만엔} + 42\text{만엔} - 48\text{만엔}) \div 2 = 7\text{만엔}$$

65세 이후
노령후생연금
차기지급제도
시행

- ②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은 노령후생연금을 66세 이후에 증액해서 받을 수 있게 됨.

- 노령후생연금의 차기 지급 제도 - 65세부터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65세부터 받지 않고 66세 이후로 지급 받기를 제안 했을 경우, 그 때로부터 증액된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표 1> 노령후생연금의 차기이월 지급 제도

차기 이월 가산액수 = 차기 이월된 대상액수 × 증액을

차기 이월 가산 대상액수는 65세 시점의 노령후생 연금 액을 기준으로 수령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 등 금액과 조정을 계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함

증액율은 지급을 차기이월 해당 월수 × 0.7%로 계산되며, 최대는 42%임

노령후생연금
지급연기 신청시
청구서를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함

- 대상자격은 2007년 4월1일 이후 「65세로부터의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노령후생연금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자에 한함.
- 60세부터 65세 사이에 해당하는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도 대상이 됨.
 -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일 기준으로 익일부터 1년 이내, 유족후생연금이나 장해후생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된 자는 대상이 되지 않음.
- 노령후생연금 지급을 차기로 미뤄 증액된 노령후생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청구서를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함.

- 노령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을 차기로 연기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거나 한 가지만을 신청할 수도 있음.

③ 65세 이상의 유족후생연금의 지급 방법의 재검토

**65세 이상의
유족후생연금과
노령후생연금
등의 지급방법
재검토**

- 유족후생연금과 노령후생연금 등의 수급권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①자신의 노령후생연금 등은 전액지급 ②유족후생연금은 본인의 노령후생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 정지됨에 따라 그 차액만이 지급*노령기초연금으로 전액 지급됨.

* 2007년 4월 1일전에 유족후생연금을 받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65세 이상(1942년 4월1일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본 개정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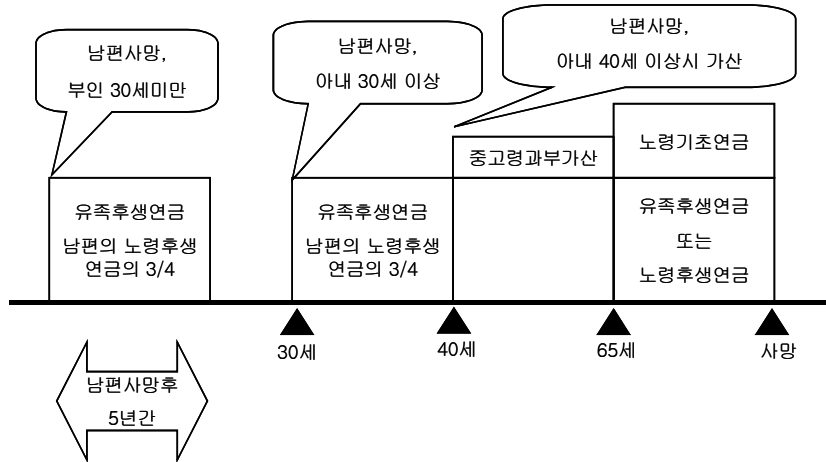
- 유족후생연금을 청구하는 자는 노령후생연금 등을 받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 유족후생연금의 지급액 결정을 위해 유족후생연금과 동시에 노령후생연금 등을 청구해야 함.

- 남편이 사망한 경우, 30세 미만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아내 등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은 5년간 유기급부가 됨.

**유족후생연금
청구시 지급액
결정을 위해
노령후생연금과
동시에 청구**

- 30세 미만의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5년간임.
- 아내에 대한 유족후생연금에 가산되는 중·고령과부가산(연간 594,200엔)은 남편 사망시에 40세 이상인 아내에게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되는 것임.
- 종래는 남편 사망시 35세 이상인 아내에 대해서는 40세부터 지급(단, 2007년 4월 1일전에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유족후생연금은 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그림 2> 지급정지후의 연금지급 월액표



④ 이혼시의 후생 연금의 분할 제도

**이혼시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쌍방
간의 분할비율
합의를 통해
분할 청구됨**

- ☐ 2007년 4월1일 이후 이혼한 남녀는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후생 연금의 보험료를 쌍방 간의 분할비율 합의를 통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연금분할의 청구서에 호적 등본이나 분할비율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함.
 - o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 수속에 의해 분할 정도(50%을 상한)를 정해야 함.
 - o 사회보험청에서 연금분할을 위해 필요한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금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⑤ 본인 요구에 따라 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 연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본인의 취지를 제안할 경우, 그 익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향후 연금의 수취를 재개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안한 익월부터 연금이 지급됨.

**본인의 신청에
따른 연금지급
중지의 경우
연금액수는
증액되지 않음**

○ 본인이 연금지급 중지를 신청할 경우, 연금은 역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액수가 증액되지 않는 구조를 가짐.

□ 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제안 또는 연금의 수취를 재개하는 취지의 제안을 할 때는 소정의 제안서를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함.

⑥ 국민연금의 보험료 액수가 변경됨.

□ 2007년 4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의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14,100엔이 됨.

□ 국민연금보험료는 장기적으로 연금액의 연동기준을 물가상승률 및 인구변동(근로인구 감소율 및 기대여명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인상하되 2017년 이후 고정되는 것으로 현행 13,300엔에서 최종적으로 16,900엔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민연금보험료
는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해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이는 급속한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유지하고자 함과 동시에 급부의 균형을 취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조정, 향후 미래 보험료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기초연금의 국고지원 규모를 1/3에서 1/2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어느 세대라도 납부한 보험료의 1.7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2004년도 후생 노동부 검산).

*자료 : www.sia.go.jp, 年金保険制度, “平成19年 4月1日からの年金制度の改正について”, 2007.4.1.

(박정희 연구원)

<또 사라진 연금기록... 5,000만건 이어 1,430만건 추가 분실>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일부 분실함**

- 직장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함께 일본 연금제도의 양대축인 국민연금의 기록을 후생노동성 산하 사회보험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라진 납부기록이 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후생노동성은 앞서 분실된 국민연금 납부기록 5,000만건에 대해 향후 1년간 대조작업을 벌여 연금 수급 과정에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최근 일본 국회에서 연금 납부기록 5,000만건이 사라진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추가로 1987년 3월 시점으로 최대 1,430만건의 연금 납부기록이 또 다시 사라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됨.
- 사회보험청은 남아있는 기록들을 대조해 보면 납부자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 해명했으나,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사회보험청의
대조 노력에도
불구, 국민의
불신감은 더욱
고조됨**

- 이에 사회보험청은 연금 불안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 가입자들의 연금 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연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등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상담 창구를 설치하긴 했으나 과거 납부영수증 등을 참고로 사라진 기록을 찾는 작업이라 사회보험청의 1만7천명에 달하는 직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임.
- 또한 납부기록 분실로 가입자와 보험청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자료 : www.sponichi.co.jp/society/news, “年金問題で國民の怒聲“安倍降ろせ!”, 2007.6.10.

(박정희 연구원)

<일본 손해보험 업계의 지구온난화 대책>

일본의
손해보험협회는
2010년까지
전력사용량을
2000년 대비
최대 18%
삭감을 목표

- 사단법인인 일본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시하라 구니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삭감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함.
 - 목표는 2010년까지 본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을 2000년대 비 최대 18%를 줄이는 것으로 함.
 - 이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배출 방안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본 목표는 일본 경제 단체연합의 자발적인 행동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임.
 - 이는 작년 11월에 책정한 순환형 경제사회구조에 따른 폐기물 삭감 목표에 의해 4월 19일 이사회에서 정한 바임.
- 2006년 11월에 책정된 손해보험업계의 목표는 도쿄 시내에 소재하는 자사빌딩 및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2000년도 기준 대비 2010년까지 20%이상 삭감하는 것으로 함.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구온난화
대책문제는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에서
발효됨

-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상황을 보면, 최근 지구온난화 대책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 교토의정서 *

-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함.
-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됨.

미국을 비롯한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이는
것임

- 주요 내용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38개 선진국들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임.

-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 있음.
o 이에 일본에서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가스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삭감 목표를 정하는 것이며, 모두 일체가 되어 진척 중에 있음.

□ 한편, 손해보험 업계는 지금까지도 1996년에 「손해보험 업계의 환경보전에 관한 행동 계획」 책정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대책」, 「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 「사내외에 있어서의 환경개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인 대처방안 예시>

배출가스
삭감을 위해
환경 ISO에
따라 불필요한
조명 소등 및
사무실 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실천

□ 배출가스 삭감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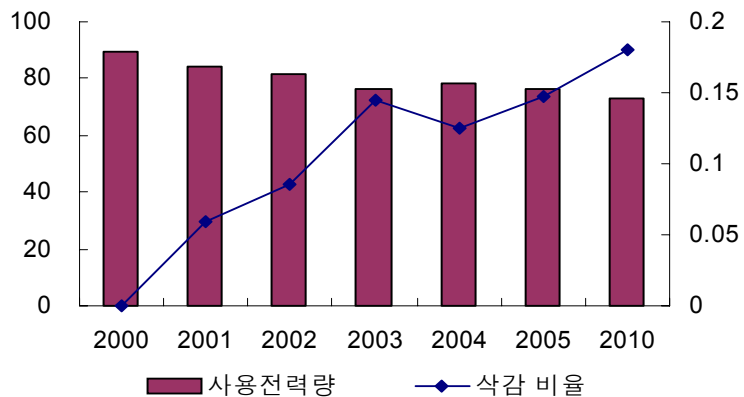
o 환경 ISO에 의한 환경 매니지먼트를 추진하고, 사무실, 회의실 등에서의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하여 전력사용량 삭감에 대처
o 사무실 내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적정온도 설정에 따른 전력사용량 삭감
o 다수로 사용 중인 프린터를 복합기로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수를 줄이고 전력사용량을 삭감

-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개선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삭감
- 비상구 유도 등을 에너지 절약형의 고휘도형으로 변경하고 비상시 사용하는 계단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센서형으로 변경
- 전력사용량의 전환을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14.8%의 삭감을 도모하고 있음.

손해보험업계의
전력사용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전력사용량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Kwh, %)



*자료 : www.sonpo.or.jp/action/release/news_07-004.html#toTop
“損害保険業界の地球温暖化対策！”, 2007.4.19.

(박정희 연구원)

4. 기타 동향

<중국-보험사들의 투자전략 다변화>

1) 논의배경

중국의
보험시장은
최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

- 중국의 보험시장은 최근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자산 운용 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에 따르면 중국의 보험시장은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매년 두자리수의 성장을 구가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경쟁의 심화로 이들의 과점적 지배력이 약화
 -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과거 규제를 통한 보수적 운용방식에서 최근 주식, 외화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국보험산업의 자산운용다변화 과정과 외화자산운용 폭 확대 등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2) 중국보험산업의 자산운용 다각화

중국
보험산업은
점진적으로
투자대상을
다양화함

- 중국 보험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투자대상을 다양화 하며 자산운용상의 변화를 보임.
 - 중국은 1995년 10월 1일 보험업법을 발효하면서 보험사들의 투자 대상을 은행예금과 국공채, 국책은행채권 등에 한정
 - 그 후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어 투자대상은 회사채, 중국펀드, 국내주식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은행예금 비중은 1999년 51%에서 2005년 37.1%로 축소되었고, 국공채의 비중도 37.3%에서 25.4%로 낮아졌으며, 중국펀드의 비중은 0.8%에서 7.8%로 증가
- 2006년 11월말 기준으로 은행예금의 비중은 33.2%이며, 이는 연초에 비해 3.44%p 축소된 것임.

중국정부는
보험산업의
수익률
제고에 관심

- 중국정부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의 향상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관심

<표1> 중국 보험사의 국내운용자산 다각화 과정

	1995	1999	2000	2003	2004	2005	2006
은행예금	○	○	○	○	○	○	○
국공채	○	○	○	○	○	○	○
국책은행 채권	○	○	○	○	○	○	○
회사채	×	신용등급 AA+이상 에 대해 총 자산의 10%이내	좌동	신용등급 AA+이상 에 대해 총 자산의 15%이내	좌동	총자산의 30%이내	좌동
증권펀드	×	총 자산의 5%이내	총 자산의 10%이내	총 자산의 15%이내	좌동	좌동	좌동
국내 주식	×	×	×	×	△	(총자산 고정자산) 의 5%	좌동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	×	×	×	×	×	×	총 자산 5%이내 (생보)

주 : ○는 허용, △는 조건부허용, ×는 불허

-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은 2006년 6월 26일 “보험산업의 개혁 및 발전에 관한 의견서”(일명 State's Ten Article)를 발간
- 이 보고서는 보험사의 운용자산 투자방식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
-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해 주식관련 상품 및 부동산, 신설기업에 대한 투자와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장

3) 외화자산에 대한 규제완화

중국정부는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

- 중국 정책당국은 2005년 4월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QDII)를 통해 외화자산 투자에 대한 금지를 해제
 - QDII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국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를 대폭 허용하는 것을 포함
 - 그러나 보험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 이에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는 2006년 12월 21일 “보험산업의 외화자산 투자관리 제안서”의 초안을 발표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의 제안서 초안과 과거의 규정을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
 - 과거의 규정 하에서는 소유 중인 외환의 80% 한도로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으나 발표된 초안에서는 총 자산의 15%까지로 투자금액을 확대
 - 또한 과거 외화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등급 상위에 해당하는 자산만을 허용했으나 초안에서는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준을 제공
 - 제안서 초안에서는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의 거래도 허용

4) 시사점

현재 중국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최근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향하는 추세이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음.
- 중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4년 긴축정책 이후 3%안팎의 움직임을 보여, 현재 금리 환경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 실제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도 2001년 4.3%에서 2003년 2.7%로 떨어졌으며, 2004, 2005년 각각 2.9%, 3.6%를 기록
-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다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는
환리스크
등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그러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 저금리와 기업의 자본수요 감소로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던 중 외화자산 투자를 돌파구로 삼았던 경험이 있었음.
-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 엔화가치의 빠른 상승으로 큰 손실이 발생
- 따라서 중국의 외화자산 투자도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홍콩에서의 채권투자 등 보수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자료 : Nomura Capital Market Review Vol10 No1, China's Insurance Companies Step Up Putbound Portfolio Investment, 2007. 4.

(김세중 연구원)

<인도-인도 Financial Protection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Max New York
Life는 Financial
Protection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 인도의 보험사 Max New York Life는 NCAER(National Council of Applied Economic Research)와 함께 Financial Protection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는 미리 선정한 440,000가구의 샘플 중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63,016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범위는 전국의 1,976개의 소지방과 2,255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
 -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에 대한 설명도 실시함.

2) 조사결과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주소득원을
잃었을 경우
재정적 위험에
직면

-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가장을 잃거나 주 소득원을 잃었을 때 재정적 위험에 직면
 - 단지 4%만이 가장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을 때 현재의 저축으로 1년 이상 살아갈 수 있다고 대답
 - 25%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의 상황에서조차 재무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응답
 - 소득수준 하위 10%는 현재의 소득이 일상지출에 미치지 못하며 하위 28%는 소득이 일상지출과 비일상지출의 합에 못 미친다고 대답

**응답자의
과반수이상
이 낙천성을
가짐**

-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천주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4%가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신
 - 96%가 소득원을 상실했을 때 1년 이상 생존이 힘들다고 응답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김.
 - 15%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으며, 시골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 낙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인도인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만
현명한
투자는 부족**

- 인도인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만 돈을 단지 집이나 은행에 보관할 뿐 현명한 투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인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 81%가량이 몇가지 형태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저축의 목적은 위급한 상황이나 자식의 교육, 노후대비 등 대부분 장기적임.
 - 그러나 51%가량이 은행에 저축을 하고 36%가량이 돈을 집에 보관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대졸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저축하고 아닌 경우 18%를 저축하는 등 가정의 교육수준에 따라 저축규모가 상이
- 인도인들은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는 전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일상적인 지출이 돈을 빌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결혼, 생일 등의 이벤트를 위한 지출이 다음을 차지함.
 -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대부는 주로 금융기관보다는 사채나 전당포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나
보험가입률
은 저조**

- 금융기관 또한 대부의 주요 수단이나 주로 내구재 구입 등 계획된 지출에 있어 많이 이용됨.
- 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나 보험가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78%의 인도인이 생명보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지 25%만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이것은 비록 재정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나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천주의의 영향이 큼.
 - 이러한 낙천성은 도시 거주자가 더욱 심하며 소득이 하위수준에 있는 경우에도 큰 것으로 나타남.

**부유함의
정도와
교육수준이
보험가입에
영향**

- 보험가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유함의 정도와 교육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 중 57%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대졸자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높은 수준임.
 - 또한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40%정도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음.
 - 마지막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 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이번 설문은 대다수의 인도 가정이 재정적 위험을 안고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험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음을 제시
- 인도는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은 상황임에도 가입수준은 낮은 모순을 가지고 있음.

**보험가입을
증진하기위
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보험 가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준 향상과 생명보험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과 저축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음.
- 인도에서는 보험상품이 재정적 보호의 수단이라기보다 세금과 저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함.
- 따라서 너무 오래 살거나 일찍 사망했을 경우의 재정적 위험에 대해 교육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효과적인
보험판매를
위해서는
성향이 다른
그룹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

- 또한 도시와 지방 거주자, 남성과 여성 등을 구분하여 다르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지방거주자에 대해서는 상품 믹스 등을 통해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 가입수준을 높여야겠으며,
- 도시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 단기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통해 보장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성의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의 14%로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필요

* 자료 : Max New York Life-NCAER, India Financial Protection Survey, 2007.3.

(김세중 연구원)

<베트남-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 심화>

지난해

베트남

보험산업은

크게 성장

- 베트남 재경부는 4월 24일 37개 보험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이 2006년 크게 성장하였음을 발표
 - 총 수입보험료는 6조 4450억 베트남동(4억 281만 미국 달러)으로 2005년에 비해 17.5%증가
 - 손해보험산업에는 12개의 자국 기업이 있으며, 그들의 점유율은 94.9%, 9개의 외국계기업의 시장점유율은 5.1%로 나타남.
 - 각 사별로는 Bao Viet 34.9%, Bao Minh 21.3%, PVI 18.1%, Pjico 10.5% 등의 점유율을 보임.

베트남의

손보사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지속

- 이러한 보험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책정하는 출혈경쟁을 지속
 - Bao Viet 그룹관계자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특정종목에 대해 30~40% 낮은 보험료를 부과
 -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거대한 사고발생시 보험사들의 지급 불능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직면
 - 현행규제 하에서 수수료는 대리점의 경우 계약금액의 2.5~12%, 중개인의 경우 15%를 넘을 수 없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

출혈경쟁은

낮은

수익률로

귀결

- 이러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손해보험산업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보험사들의 거래액은 1조 베트남 동(62억5천만달러)에 달하나 이익은 천분의 일 수준인 10억 동(625만 달러)에 불과
 -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험 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아 이러니한 상황임.

**감독당국도
과당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감독당국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오히려 규제완화를 요구
 - 재정부 보험국장인 Trinh Thanh Hoan은 출혈경쟁 억제를 위해 규정을 어기는 회사의 명단을 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당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시사
 - 반면 Bao Minh의 Tran Vinh Duc사장은 재정부가 수수료 상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
 - 경제 통합화의 맥락에서 언제 얼마나 지출하는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 오너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출혈경쟁은
자제해야 함**

- 베트남 보험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 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나 과도한 출혈경쟁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8,400만의 인구 중 650만명만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상황
 - 또한 작년 WTO 가입으로 인한 외국사 진입의 확대 등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시장선점을 위한 무리한 경쟁은 보험사의 도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이 성숙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자료 : VietNamNet, premiums, commissions remain problems of non-life insurance 2007. 4.
VietNamNet, Vietnam's life insurance market a potential goldmine 2007. 5.

(김세중 연구원)

통 계 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원, %)

구 분	CY2005	CY2006				CY2007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5.5	6.3	5.1	4.8	4.0	4.0
경상수지	5,167.1	-1,118.4	692.0	374.9	6,144.1	-1,519.4
수 출	76,811	73,885	81,473	82,713	87,394	84,816
수 입	70,688	72,542	76,720	80,216	79,905	82,027
실업률	3.5	3.5	3.5	3.5	3.3	3.2
금리	국고채(3년)	5.06	4.93	4.89	4.69	4.82
	회사채(3년)	5.49	5.30	5.17	5.02	5.18
소비자물가지수	100.5	101.9	102.0	103.3	102.6	104.1
환율	원/달러	1,011.6	971.6	948.9	946.2	929.8
	원/엔화	859.9	831.7	834.0	802.2	781.8
KOSPI	1,338.8	1,331.7	1,249.2	1,356.5	1,418.8	1,431.6
외환보유고	210,391	217,344	224,357	228,224	238,956	243,915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CY2007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71,225	77,359	92,935	81,083	93,699	89,600	115,113	94,663
생명보험	53,602	60,022	75,781	66,460	74,238	69,914	94,257	74,700
손해보험	17,623	17,337	17,154	14,623	19,461	19,686	20,856	19,963
은 행	176,673	96,532	49,098	-41,969	225,384	128,483	181,165	33,002
일반계정	196,056	84,452	41,787	-85,002	183,429	82,785	165,339	-2,513
신탁계정	-19,383	12,280	7,311	43,033	41,955	45,698	15,826	35,515
증 권	11,948	17,618	19,175	-8,291	18,650	48,065	13,445	29,858
투 신	46,962	-37,592	74,571	184,828	-5,011	25,649	97,260	73,030
중 금	2,048	-10,616	40,443	5,651	31,812	53,010	10,350	60,303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0,125	31,722	119,887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성장률	-7.4	8.0	-1.2	5.6	6.4	7.5	14.3	8.6
	구성비	17.2	19.7	19.5	19.2	20.1	18.0	21.3	19.6
사망	보험료	68,182	69,342	271,215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성장률	5.7	5.4	6.2	4.9	5.3	5.8	5.3	5.3
	구성비	38.8	43.2	44.1	44.3	45.5	40.0	42.5	43.0
생사 혼합	보험료	18,070	17,514	72,596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성장률	-10.9	-8.2	-8.9	-8.9	-11.0	-6.1	0.6	-6.4
	구성비	10.3	10.9	11.8	10.6	10.7	9.4	10.3	10.2
변액 보험	보험료	24,761	30,752	83,822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성장률	295.8	168.4	252.4	127.2	70.7	18.8	-0.1	37.5
	구성비	14.1	19.1	13.6	17.5	17.8	16.3	17.9	17.3
개인계	보험료	141,137	149,330	547,521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성장률	14.2	18.8	14.0	14.9	11.3	6.9	5.5	9.4
	구성비	80.4	93.0	89.1	91.7	94.1	83.7	91.9	90.1
단체	보험료	34,486	11,298	67,201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성장률	7.2	38.2	17.1	13.6	-7.1	-15.0	23.6	-2.5
	구성비	19.6	7.0	10.9	8.3	5.9	16.3	8.1	9.9
합계	보험료	175,623	160,628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성장률	12.8	20.0	14.4	14.8	10.0	2.6	6.8	8.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1,078	22,329	79,830	18,366	20,876	20,244	22,133	81,619
	증가율	15.5	2.5	12.2	2.7	12.6	-4.0	-0.9	2.2
	지급률	70.0	70.4	66.6	60.8	66.7	62.5	61.0	62.7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4,793	27,316	99,169	25,910	29,005	27,675	29,430	112,019
	증가율	4.1	9.9	9.4	14.1	19.1	11.6	7.7	13.0
	지급률	36.4	39.4	36.6	37.2	40.9	38.4	40.3	39.2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35,996	23,330	109,596	18,080	18,284	18,737	18,379	73,480
	증가율	40.6	-16.0	7.1	-26.1	-29.2	-47.9	-21.2	-33.0
	지급률	199.2	133.2	151.0	108.3	109.9	110.4	104.3	108.2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509	2,463	5,417	3,317	4,077	6,149	8,074	21,616
	증가율	137.5	67.9	86.4	454.7	381.5	307.5	227.8	299.1
	지급률	6.1	8.0	6.5	12.1	14.7	20.9	26.3	18.8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83,377	75,439	294,012	65,672	72,242	72,805	78,016	288,734
	증가율	22.1	-0.6	10.1	0.1	3.9	-12.7	3.4	-1.8
	지급률	59.1	50.5	53.7	45.6	49.3	48.2	49.5	48.2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6,466	18,729	61,803	17,208	13,496	13,154	18,831	62,425
	증가율	37.8	19.9	25.7	17.6	12.9	-20.1%	0.5	1.0
	지급률	47.7	165.8	92.0	133.5	170.7	44.9%	134.9	95.2
전체	지급보험금	99,843	94,168	355,815	82,898	85,737	85,958	96,847	351,159
	증가율	24.4	2.9	12.5	3.2	5.2	-13.9%	2.8	-1.3
	지급률	56.9	58.6	57.9	52.7	55.1	47.7%	56.5	52.8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5,010	5,523	18,639	5,562	6,029	6,448	6,917	24,956
	증가율	34.5	-5.6	-4.9	47.3	39.2	28.7	25.2	33.9
	사업비율	16.6	17.4	15.5	18.4	19.3	19.9	19.1	19.2
사망보험	사업비	16,913	16,437	65,218	15,872	17,138	17,855	18,947	69,813
	증가율	4.3	-19.6	-4.9	-1.3	8.5	5.6	15.3	7.0
	사업비율	24.8	23.7	24.0	22.8	24.2	24.8	26.0	24.4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5,828	6,124	22,894	5,770	5,398	5,538	5,951	22,656
	증가율	35.8	12.5	52.7	6.0	-1.8	-5.0	-2.8	-1.0
	사업비율	32.3	35.0	31.5	34.6	32.4	32.6	33.8	33.4
개인보험계	사업비	27,751	28,085	106,750	27,203	28,565	29,842	31,815	117,425
	증가율	14.6	-11.5	6.6	7.5	11.5	7.5	13.3	10.0
	사업비율	19.7	18.8	19.5	18.9	19.5	19.8	20.2	19.6
단체보험계	사업비	935	845	3,200	765	788	836	1,042	3,499
	증가율	32.5	-29.8	3.7	11.5	7.5	-10.6	23.3	9.3
	사업비율	2.7	7.5	4.8	5.9	8.6	2.9	7.5	5.3
전체	사업비	28,686	28,929	109,950	27,968	29,354	30,678	32,856	120,924
	증가율	15.1	-12.2	6.5	7.6	11.4	6.9	13.6	10.0
	사업비율	16.3	18.0	17.9	17.8	18.9	17.0	19.2	18.2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85	3132	756	716	902	758	3,132
	성장률	14.6	10.4	-4.8	-4.7	-1.2	-3.5	-3.4
	구성비	1.2	1.3	1.1	1.0	1.2	1.0	1.1
해 상	보험료	1,186	6323	2,101	1,604	1,304	1,314	6,323
	성장률	4.4	4.1	50.2	13.6	1.9	10.9	19.9
	구성비	1.8	2.1	3.0	2.2	1.7	1.7	2.1
자동차	보험료	22,100	96492	22,598	24,344	24,444	25106	96,492
	성장률	6.1	3.1	5.7	10.3	9.4	13.6	9.8
	구성비	34.3	34.2	32.6	33.7	31.4	32.9	32.6
보 증	보험료	2,630	11428	2,972	2,665	3,073	2718	11,428
	성장률	15.9	11.6	31.8	11.5	10.1	3.4	13.5
	구성비	4.1	3.9	4.3	3.7	3.9	3.6	3.9
특 중	보험료	5,152	24987	6,143	6,159	6,813	5872	24,987
	성장률	14.3	12.4	6.9	7.2	8.8	14.0	9.1
	구성비	8.0	8.9	8.9	8.5	8.7	7.7	8.4
해외 원보험	보험료	173	823	156	205	278	184	823
	성장률	-7.1	-23.5	20.9	43.1	69.9	6.4	35.2
	구성비	0.3	0.2	0.2	0.3	0.4	0.2	0.3
장 기	보험료	29,932	136802	31,564	33,352	34,814	37072	136,802
	성장률	18.3	16.8	19.3	21.6	21.2	23.9	21.5
	구성비	46.4	43.8	45.6	46.1	44.7	48.6	46.2
개 인 연 금	보험료	1,789	7975	1,836	1,884	2,119	2136	7,975
	성장률	6.5	2.6	9.0	9.8	18.5	19.4	14.3
	구성비	2.8	2.7	2.7	2.6	2.7	2.8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752	7868	1,133	1,370	4,216	1149	7,868
	성장률	29.8	37.1	-18.1	234.5	-18.3	52.8	2.1
	구성비	1.2	3.0	1.6	1.9	5.4	1.5	2.7
계	보험료	64,498	295829	69,259	72,299	77,962	76309	29,829
	성장률	12.8	10.8	13.1	16.5	12.3	18.3	15.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0.9	48.8	40.7	40.2	39.6
	사업비율	53.2	46.2	42.7	48.6	45.6
	합산비율	94.1	95.0	83.4	88.8	85.2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2.0	51.3	50.3	46.4	52.1
	사업비율	31.0	27.7	30.0	31.2	33.5
	합산비율	83.0	79.6	80.2	77.7	85.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6.6	77.2	78.9	79.5	79.0
	사업비율	31.9	31.4	31.6	31.5	31.8
	합산비율	108.5	108.6	110.5	111.0	110.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9	16.2	10.5	21.5	23.4
	사업비율	21.3	12.5	19.2	17.3	21.5
	합산비율	24.2	28.8	29.7	38.8	44.9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1.6	48.5	55.8	56.8	55.3
	사업비율	25.8	22.1	23.3	24.5	26.2
	합산비율	77.4	70.5	79.2	81.3	81.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2.4	26.1	40.4	36.7	44.7
	사업비율	72.9	97.7	97.3	98.0	93.2
	합산비율	125.3	123.8	137.7	134.7	137.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6.4	86.7	85.3	84.3	83.9
	사업비율	16.5	17.4	18.0	18.5	18.4
	합산비율	103.0	104.1	103.2	102.8	102.3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25.9	119.9	119.8	118.9	125.4
	사업비율	10.0	9.5	9.2	9.3	9.4
	합산비율	135.9	129.4	129.0	128.2	134.8
전 체	경과손해율	77.9	78.6	78.7	78.8	78.6
	사업비율	23.2	22.6	23.2	23.5	23.8
	합산비율	101.1	101.2	101.9	102.3	102.3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연구조사자료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정책연구자료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 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태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CEO Report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씨티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7년 여름호(통권 42호)

2007년 7 월 10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유	형	균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쇠 소 대 화 인 쇠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5, 368-4240)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